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17세기 중후반 禮訟의 전개와
政治地形의 변화

- 禮訟의 政治史的 과정과
國王-朋黨 力學關係 변화를 중심으로 -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양선비

17세기 중후반 禮訟의 전개와 政治地形의 변화

- 禮訟의 政治史的 과장과
國王-朋黨 力學關係 변화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문 중 양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양 선 비

양선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17세기 중후반 벌어진 예송의 정치적 파장이 1680년 (숙종 6)의 庚申換局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정치지형 변화를 국왕과 봉당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예송은 당시 조선의 정치, 사상계 최대의 현안이었다. 이 논쟁은 승하한 孝宗의 혈통상의 계보를 嫡長子로 볼 것인지, 中庶子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벌어졌다. 논자들은 두 입장으로 분열되어 논쟁을 전개하였는데, 南人은 전자를, 西人은 후자를 지지하였다.

1659년과 1674년 두 차례에 걸쳐 촉발된 예송의 정치적 파장은 1680년까지 이어졌으나, 그 양상은 시기별로 상이하였다. 각각의 국면에 따라 각 朋黨과 戚臣, 국왕은 각기 다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기해예송에서는 비록 효종의 종통상의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서인의 주장이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서인 주도의 정치구도가 변화하지는 않았다. 논쟁의 진행 과정에서 예송이 정치적 투쟁으로 비화할 조짐이 드러났으나, 《경국대전》을 근거로 더 이상의 정치적 논란을 봉쇄한 결정으로 심각한 정치적 대립은 일어나지 않았다.

갑인예송의 전개 양상은 기해예송과는 달랐다. 현종은 기해예송 당시의 미온적인 결정을 뒤집고 적극적으로 논쟁에 개입하여 효종을 仁祖의 嫡長子로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인의 예설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결과 남인의 禮論的 명분이 강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종은 대대적인 정권교체 및 서인에 대한 처벌까지 나가지는 않았다.

갑인예송 직후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한 이후, 남인이 요직을 차지하는 집권세력 교체가 일어났다. 이러한 교체의 명분은 서인이 誤禮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예송의 정치적 파장이 숙종 즉위 이후의 정권교체를 불러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숙종은 국왕의 정치

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척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예론을 명분으로 남인의 집권을 승인함으로써 國王-朋黨 力學關係를 주도할 수 있었다.

숙종의 즉위로부터 庚申換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남인과 척신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남인은 告廟를 통해 서인의 誤禮를 지속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예론적 명분을 강화해 나갔고, 동시에 권력의 물리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병권 장악을 시도했다.

서인이 실각과 남인의 집권은 사실상 숙종에 의해 승인된 것이었으나, 동시에 남인의 예론이 正論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남인에 대한 사상적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이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불러왔다. 남인계 인물들의 역모에 대한 告變이 발생하자 賜死와 대규모 처벌을 동원한 換局이 발생한 것이다. 환국은 더 이상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전제한 위에서 사상적·정치적 대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 결과 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해 나갔다.

환국을 통해 숙종은 집권 붕당과 실각한 붕당, 그리고 척신들과의 역학관계를 장악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터부시되었던 붕당의 존재가 사실상 승인되었으며, 국왕과 붕당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국이 변동하였다. 이로써 예송의 정치적 파장은 종식되었으며, 국왕과 붕당간의 제휴·견제, 환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주요어 : 禮訟, 西人, 南人, 戚臣, 國王-朋黨 力學關係, 換局
학 번 : 2009-20046

목 차

緒論	1
一. 禮訟과 政治史 연구에 대한 재고	4
二. 己亥禮訟 : 국왕의 위상을 둘러싼 논란의 집화	16
三. 甲寅禮訟과 현종의 적극적 개입	29
四. 誤禮에 대한 문책과 執權朋黨의 교체	44
五. 換局과 國王-朋黨 力學關係 변화	56
結論	70
참고문헌	73
Abstract	76

緒論

예송은 17세기 중후반 조선의 정치, 사상계 최대의 현안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예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던 국왕뿐 아니라 예설을 연구하던 학자들과 그들이 속한 붕당, 재야의 유생들까지 광범위하게 논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지배집단 대부분이 참여하였던 예송은 이후 조선의 정치, 사상계의 지형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예송은 예학적 명분을 둘러싼 학문적·사상적 논쟁의 성격과 권력투쟁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예송의 정치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예송에 참여한 각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성격 변화 및 그들 간의 역학관계 변화, 그리고 예송이 가져온 정치사적 파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예송은 16세기 사림의 득세 이후 붕당이 등장하고 국왕, 붕당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국이 변동하던 조선의 전통 속에서 출발한 사건이었다. 또한 예송은 그 진행 과정에서 주요한 참여자였던 붕당의 정치적 성격이 변화하고, 국왕과 붕당 간의 역학관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불러온 사건으로 그 정치사적 위치와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예송의 정치사적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붕당과 국왕, 예송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왕과 복수의 붕당 간의 복합적인 역학관계 및 그 상호작용의 중요한 매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성리학적인 명분과 禮였다. 비록 현실의 차원에서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이익 획득을 위한 투쟁이 국왕과 붕당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매개하고 있던 것은 禮였으며, 갈등의 조정과 성패는 예학적 명분 획득을 통해 판가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을 國是로 삼고 있던 조선 사회의 정치적 특성이었으며, 예송이 지니는 정치사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17세기 정치사에서 예송이 지니는 정치사적 의미는 바로 예송에 국왕과 붕당이라는, 당대의 주요한 정치 집단이 참여하였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붕당은 점차 정치적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해지는 질적 변화를 겪었으며, 국왕과 붕당간의 역학관계 역시 변화하였다.¹⁾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송의 처분이 마무리된 직후 환국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환국은 국왕의 주도 하에 집권 붕당이 교체되는 사건으로, 17세기 후반~18세기 정치사의 특징적인 국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국이 예송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졌다는 것은 예송을 단순히 현종대의 시종을 이루는 정치적 사건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예학적 명분을 중심으로 한 政治地形의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換局이라는 또 다른 政治地形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²⁾

1) 예송 이전의 붕당 역시 정치적 사안에 따라 대립하고, 붕당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이 변화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예송을 겪기 이전의 붕당은 보다 '공존'이 중시되었으며, 뚜렷한 당론보다는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 정권 획득이 가시화되었던 17세기 중반 이후의 붕당과는 그 질적 성격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예송 이전 붕당의 성격에 관해서는 李泰鎭, 1985 <朝鮮 中·後期 政治史 理解의 方向>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變遷》, 韓國研究員 참조.

2) 기존 연구에서는 예송을 己亥禮訟, 甲寅禮訟 단위로 분절적으로 연구하였으며, 甲寅禮訟의 과장을 1675년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환국에 관한 연구 역시 庚申換局 전후의 정세부터 주목하였을 뿐 甲寅禮訟 때 현종의 처분이 미친 과장에 대해서는 원론적 차원에서만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鄭玉子, 1989 <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 《韓國文化》 10, 234~236; 洪順敏, 1986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韓國史論》 15, 138쪽의 지적 참조.

본고는 17세기 중후반 예송이 정치구조를 변화시킨 양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특히 현종 치세의 시작과 끝을 관통한 예송논쟁이 현종대의 정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 변화한 政治地形은 어떠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예송의 정치사적 파장을 현종대에 한정하지 않고, 현종의 뒤를 이은 숙종 초반, 庚申換局 이전까지로 확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의 정치집단이 예송을 거치면서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겪었는지, 국왕-붕당간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결과 국왕과 붕당 및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예송이라는 사안이 국왕과 붕당이라는 당대의 중요한 정치주체와 맞물리며 어떤 방식으로 당시의 정치 현실과 상호작용하였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의 하나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一. 禮訟과 政治史 연구에 대한 재고

17세기 중반 현종의 재위 기간 동안 두 차례 일어났던 禮訟은 당대의 정치, 사상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예송은 왕실의 禮를 두고 벌어진 사상적인 대립이기도 하였으며, 국왕 및 붕당까지 얽히며 중대한 정치적인 변화를 초래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송이 과연 17세기 정치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예송의 귀결이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禮를 매개로 요동치던 당대 정치사의 특질을 해명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송이 당대의 역사에서 지니는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각도에서 예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 예송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들로는 예송의 사상사적 배경 및 예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 및 예송과 결부된 정치적 사안들, 곧 王權과 臣權의 문제, 公-私 관념에서 예론을 분석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³⁾ 이러한 연구들은 예송의 철학적 기초를 밝히면서 그 내부에 얽혀있던 다양한 관념들이 정치학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예송은 禮의 본질과 적용에 관한 사상적인 논쟁이었던 동시에 당대 정치의 핵심에 있었던 국왕 및 붕당들 간의 정치적 대립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예송이 당대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李成茂는 인조대 元宗追崇論爭과 현종대 두 차례의 예송의 진행과정 및 그 예론적 쟁점을 분석하고,

3) 이처럼 예송의 내적 논리에 초점을 맞춘 예송 연구사에 대해서는 이봉규, 2006 <실학과 예학-연구사에 대한 회고와 전망> 《韓國實學思想研究 1》, 혜안, 230~238쪽 참조.

이에 개입된 인물들을 통해 예송과 당쟁의 관계를 추적하였다.⁴⁾ 김세봉 역시 현종대의 예송 전개 과정을 분석하며 국왕과 봉당, 봉당과 봉당간의 대립에 주목하였으며 갑인예송 이후 숙종 초기 송시열에 대한 告廟 논쟁까지 정리함으로써 예송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였다.⁵⁾

한편 예송의 정치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송에 참여한 주요한 정치주체들이었던 국왕과 봉당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송 역시 당시의 정치구조 위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17세기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해 제기되었던 다양한 입론들을 고찰한 위에 논의가 진행되어야 그 정치사적 위치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중엽 봉당의 등장 이래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제기되어, 예송까지를 포괄하는 정치구조를 분석한 연구로는 먼저 朋黨政治論을 들 수 있다.⁶⁾ 봉당정치론을 주장하고 봉당정치 개념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李泰鎭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⁷⁾ 그는 조선의 봉당정치는 성리학적인 정치운영방식의 한 실현

4) 李成茂, 1992 <17世紀의 禮論과 黨爭>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9~82쪽.

5) 김세봉, 2003 <예론(禮論)의 전개와 그 양상>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179~258쪽.

6) 봉당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에 대해서는 朴光用, 1987 <조선후기 정치세력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 諸問題 上》, 한울, 93~132쪽; 吳洙彰, 1987 <조선후기 정치운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 諸問題 上》, 한울, 133~172쪽; 鄭萬祚, 1993 <朝鮮時代의 士林政治>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一朝閣, 196~244쪽 참조.

7) 봉당정치 및 봉당정치론에 관한 李泰鎭의 연구로는 李泰鎭, 1985 <朝鮮中·後期 政治史 理解의 方向>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變遷》, 韓國研究員, 2~48쪽(이하 1985(1)); 李泰鎭, 1985 <17세기 朋黨政治와 中央軍營制>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變遷》, 韓國研究員, 50~218쪽(이하 1985(2)); 李泰鎭, 2003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25~40쪽; 李泰鎭, 2003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41~61쪽.

형태이자 ‘學緣을 바탕으로 하면서 君子의 黨을 자처하는 朋黨들이 서로 抗爭을 벌이는 형태’이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봉당간의 공존과 상호비판 및 견제를 들었다.⁸⁾ 곧 권력의 획득을 위한 봉당간의 투쟁과 알력을 중심에 두고 있던 黨爭 개념을 벗어나서, 상호 비판을 통해 건전한 정치운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상대당과의 공존 여부가 봉당정치와 그렇지 않은 정치형태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⁹⁾ 吳洙彰은 이를 인조대의 상황으로 구체화한 연구에서, 당시의 朋黨은 대립보다는 공통기반에 충실하였으며 대립 못지않게 사림이라는 공통기반 속에서의 합의도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학연과 혈연에 기초한 조선 朋黨의 특성을 인식한 조선의 독자적인 朋黨認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인조대 봉당정치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었다.¹⁰⁾

이러한 정의에 따라 봉당정치에 대한 역사적 시기구분 역시 이루어졌다. 봉당정치의 특질을 무엇보다도 공존과 상호비판에 두고 있었던 만큼, 그 시기구분 역시 봉당 간의 공존 양상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선조대 봉당정치의 성립, 인조대의 정상적 운영, 효종말 · 현종초 정치적 대립의 가열, 숙종 초년 봉당정치의 파탄, 탕평의 실시와 世道政治로의 전락’¹¹⁾이라는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조대부터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봉당정치 및 이후의 정치구조에 대한 개별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¹²⁾

8) 李泰鎭, 1985(1), 42~46쪽.

9) 鄭萬祚(1993), 217~220쪽.

10) 吳洙彰, 1985 <仁祖代 政治勢力的 動向> 《韓國史論》 13, 49~119쪽

11) 吳洙彰(1987), 141쪽

12) 吳洙彰(1985); 洪順敏, 1986, 앞의 논문; 禹仁秀, 1990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 《歷史教育論集》 15, 97~122쪽; 禹仁秀, 1991 <朝鮮 仁祖代 政局의 動向과 山林의 役割> 《大丘私學》 41, 1~33; 李迎春, 1991 <服制禮訟과 政局變動 - 第二次禮訟을 中心으로> 《國史館

이러한 논의들은 봉당 간의 공존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조선 후기 정치구조를 설명함으로써 당대 정치사 이해에 기여하였다.

한편 鄭萬祚는 다양한 봉당론을 역사적 추이 및 지향성에 따라 검토한 뒤,¹³⁾ 봉당정치론을 검토하고 일정 부분 이를 인정한 위에서 士林政治 개념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림정치를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말까지 존속했던 정치형태로, 주도세력은 士林이었으며 성리학적 정치이념의 구현을 정치목표로 하여 公論을 앞세운 상호비판과 견제, 곧 朋黨政治를 정치운영방식으로 하고 있던 정치형태였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사림정치는 봉당정치를 포괄하는 정치형태이며, 봉당정치는 사림정치의 정치운영 방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봉당정치론에 입각하거나 이를 일정 부분 긍정한 사림정치에 관한 연구가 제출되는 한편, 이에 대한 다른 시각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金龍德은 공존과 상호비판이라는 봉당정치론의 전제는 己丑獄이 일어났던 선조대에서부터 적용될 수 없는 문제이며, 봉당의 발생과 당쟁은 한정된 벼슬과 이에 결부된 이권을 두고 벌어진 것이지, 당쟁을 곧 봉당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⁴⁾

鄭玉子는 봉당정치론의 단계구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봉당정치는 현대의 與黨과 野黨의 역할분담을 포함하는 현대의 정당정치와 유사한 체제이며, 全權體制 구축은 정치집단의 속성상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예송과 환국은 봉당정치의 전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그는 봉당정치 역시 하나의 정치형태이며 그 극성기

論叢》22, 219~260쪽; 鄭景姬, 1993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의 시도〉 《韓國史論》30, 125~178쪽.

13) 鄭萬祚, 1989 〈16世紀 士林系 官僚의 朋黨論〉 《韓國學論叢》12, 79~129쪽; 鄭萬祚, 1992 〈朝鮮朝 ‘黨爭’의 政治理論〉 《朝鮮後期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341~366쪽.

14) 金龍德, 1986 〈‘朋黨政治論’ 批判〉 《정신문화연구》86년 여름호, 69~79쪽.

15) 鄭玉子, 1989 〈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 《韓國文化》10, 211~239쪽.

에 말패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붕당정치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미화하는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李成茂 역시 붕당정치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¹⁶⁾

한편 붕당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西人, 南人 혹은 老論, 少論, 南人 등의 큰 틀로만 나누어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붕당 내의 다기한 분화상태에 주목하며 外戚과 宗親 등의 다양한 정치세력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吳洙彰은 인조대 정치세력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黨色만으로 당대의 정치사를 파악하려는 것의 모순을 지적하고, 朋黨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政局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西人과 南人에 매몰되어 있던 인조대 정치사 인식을 극복하고 反正功臣과 非功臣士類 간의 대립을 발굴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¹⁷⁾ 鄭萬祚는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한 이후에 집권하던 西人 내부에도 인조대부터 현종대까지 漢黨과 山黨이라는 상이한 지향과 현실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집단들이 존재하였으며, 그만큼 붕당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¹⁸⁾ 洪順敏은 숙종 초반을 대상으로 黨 내에도 주도세력과 견제세력이 존재하였음에 주목하고, 이를 黨의 하위개념인 朋으로 규정하여 主導朋과 牽制朋으로 나누어 정치집단 및 관직운영체계를 설명하였다.¹⁹⁾ 이러한 연구들은 붕당을 선형적인 존재로 파악하였던 당쟁사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정치집단과 권력관계의 복잡한 면모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특정 왕대, 혹은 換局으로 구획되는 특정 시기의 정치집단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16) 李成茂, 앞의 논문 참조.

17) 吳洙彰(1985) 참조.

18) 鄭萬祚, 1999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鄭萬祚, 1999 <朝鮮 顯宗朝의 公義 · 私義 論爭과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國學資料院

19) 洪順敏, 1986, 앞의 논문 참조.

됨으로써 각 시기별 정치집단의 분화와 변모를 이끌었던 요인을 장기적인 흐름에서 파악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예송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보이는데, 예송을 단순히 현종대의 정치사 속에서만 바라봄으로써 숙종 초반 예송이 지녔던 政治史的 과장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붕당과 함께 당대 정치를 이끌어가던 중요한 축이었던 국왕과 붕당간의 관계, 혹은 王權과 臣權에 주목하여 당대 정치를 파악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吳洙彰은 17세기 山林이 대두되는 양상을 분석하였으며²⁰⁾, 나아가 王權과 臣權의 관계를 분석하였다.²¹⁾ 국왕은 관념적인 전제권을 지닌 존재였으나 신료들에 의해 지속적인 견제를 받는 존재였기에 그 전제권은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사족 역시 공론과 인사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였으나 구체적인 쟁점에서 국왕의 결정을 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족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 朋黨이며, 붕당은 늘어난 정치참여층과 정치권력을 향한 경쟁을 나름의 질서에 의해 조절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이처럼 국왕과의 상호작용 속에 국왕에 대응해 사족층의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된 존재가 명분과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山林이었으며, 붕당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송을 거치면서 붕당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국왕을 견제하기 위해 대두되었던 山林이 붕당 내부의 갈등에 얽혀 들어가며 붕당이 정치세력의 확산을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세력을 도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파악하였다.²²⁾

金駿錫은 주자학의 명분론, 학문론, 정치론에 주목하여 國王論을

20) 오수창, 2010 <17세기 조선의 정치세력과 산림> 《조선시대 정치, 틀과 사람들》, 한림대학교 출판부

21) 오수창, 2003 <국왕(國王)과 신료(臣僚)의 역학관계>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39~77쪽.

22) 오수창(2003), 73쪽.

분석한 연구에서 17세기와 관련하여 宋時烈과 許穆의 國王論을 분석하였다.²³⁾ 여기에서 그는 ‘世道專權’을 특정의 신하에게 위임하자고 주장하며 봉당을 긍정하던 송시열과 禮敎, 禮樂을 통해 군주권의 양양을 제창한 허목을 통해 17세기 서인과 남인의 국왕론을 대비시켰다.

李迎春 역시 국왕과 봉당 간의 역학관계에 주목한 연구성과를 제시하였다. 이영춘은 국왕과 봉당간의 역학관계를 조선 후기의 왕위계승 문제와 연결시켜 분석하였다.²⁴⁾ 그의 연구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웠던 국왕-봉당간의 역학관계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당시 정국변동에서 왕위계승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및 王權의 역할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16세기부터 조선 정치사의 주요한 주체로 떠오른 봉당 및 봉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구조를 파악하고, 봉당과 봉당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뿐 아니라 국왕과 봉당간의 상호작용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당시의 정치구조를 이해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성과 위에 현종대 예송이 지니고 있었던 정치적, 사상적 의미 및 논쟁에 참여한 국왕과 봉당 간의 정치적 관계의 중요한 면모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왕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17세기 중후반, 특히 예송을 중심으로 현종대 정치사를 살펴볼 때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봉당의 특성 및 존립 근거가 상대 봉당을 인정하고 공존을 도모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자기 당의 패권을 마련하고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었는지 여부와, 예송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검토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봉당과 이들 간의 爭鬪가 조선

23) 金駿錫, 1992 〈朝鮮後期の 黨爭과 國王論의 추이〉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404~410쪽.

24) 李迎春, 1998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5~20쪽.

후기 정치운영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붕당 및 이에 기반한 정치구조에 관해서는 복수 당의 공존 여부에 대한 평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송에 관한 평가도 엇갈렸다. 붕당간의 공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예송은 일당전제의 단초를 열었던 사안으로, 현종 및 숙종대 초반의 정치는 붕당정치 파탄을 예고하는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복수집단이 존재하는 정치형태에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파악할 경우 예송과 이후의 환국은 서인과 남인의 대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사상적 투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붕당의 정치적 기능과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동태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 당과의 공존 혹은 대립 여부만을 중심으로 예송 및 이후의 정치구조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예송이 붕당 및 정치구조의 변화에 끼친 영향과 그 시대적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붕당간의 공존 혹은 대립 여부는 단순한 관직의 점유 여부, 재야 언론의 주도 여부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왕과의 관계 속에서도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예컨대 換局과 같은 경우 특정 붕당이 득세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였으나 재야에 있던 붕당이 국왕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재집권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공존과 갈등의 여부로는 그 정치사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송의 전개과정 뿐 아니라 두 차례 예송 및 庚申換局으로 이어지는 정국변동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예송 연구에서 서인과 남인은 예송에 앞선 선형적인 집단으로 상정되었으나, 산당과 한당의 대립, 복수의리 논쟁 등에서 드러나듯 각 정치집단은 단일한 정체성을 보이기보다는 예송의 진

행과정 속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봉당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기존 연구에도 유의하여, 집권 서인 및 갑인환국 이후 집권세력 내부의 대립의 양상을 면밀히 살피고, 공존과 대립의 두 극단 속에 어떠한 형태의 정국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봉당간의 대립은 기존에 지적되었듯이 공존보다 점차 신료층 내부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공존체제가 깨어진 현상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당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자세력 결집을 통해 정권획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봉당의 정치적 성격이 변화하는 현상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예송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당대의 주요 봉당간의 정치적 주도권 변화까지 이끌어 냈던 사실상 최초의 사안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예송의 전개 과정, 특히 甲寅禮訟 이후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효종대까지 서인이 지속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던 상황이 이 예송을 시초로 집권 봉당의 교체까지 이루어질 만큼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보다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예송은 봉당간의 대립을 격화시킨 객관적인 조건의 하나로 단순화되어 파악되었을 뿐 대립의 격화 과정에서 예송 자체가 지니고 있었던 의미가 정치사·사상사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으나 예송은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두 가지 복제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각기 하나의 예설을 주장하였던 서인과 남인간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禮論의 득실과 국왕의 판단에 의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대립하는 복수 봉당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드

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논쟁이 점차 이항대립의 극한으로 흘렀다는 사실은 전대의 정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송의 진행 과정에서 봉당 내의 정치적 결집 정도가 어떠한지, 그 변화에 예송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시기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조, 효종대대까지는 비교적 느슨한 정치적 결집양상을 보였던 서인과 남인이 예송이 격화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정권 획득을 위해 대립하는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보였으며, 학인들이 개별적으로 예설을 둘러싸고 벌이던 논쟁이 점차 당론 대립의 양상으로 轉化하였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顯宗 사후 肅宗 초년의 정국에까지 예송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庚申換局 이전까지는 예송에서 획득된 名分이 정국변동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예송이 직접적으로 진행되었던 시기 뿐 아니라 후속 시기의 정세를 염두에 두고 예송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차례 예송과 이후 庚申換局 과정에서 국왕과 봉당간의 力學關係를 보다 균형 있는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봉당의 입장에서 예송을 연구한 논의들 외에도 王權을 중심으로 왕위 계승 문제라는 차원에서 예송을 파악한 기왕의 연구들은 신료와 국왕의 측면에서 예송의 문제를 분석하여 양 측면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예송과 이후의 환국을 추동한 주체 중 국왕 혹은 봉당이라는 하나의 존재에 집중한 나머지, 국王權의 강화 혹은 臣權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양자의 상호작용 및 力學關係라는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왕은 天命을 부여받은 존재로, 원칙적으로 그 위상은 집단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의 원종추송논쟁의

경우에서 보이듯 현실의 차원에서 變禮란 언제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며, 그 때마다 국왕과 신료간의 力學關係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고는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變禮는 국왕 혹은 신료집단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와 얽혀 의도적으로 부각된 사안으로, 후대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와는 달리 예송은 이미 승하한 孝宗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顯宗과 肅宗은 물론이고 효종의 신료이기도 하였던 서인, 남인 모두 자의든 타의든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으며, 先王과 當宁의 위상을 嫡子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양단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 문제가 되었던 역설적 상황에서 예송의 정치적 파급력은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예송의 정치적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논쟁의 추이와 논란이 되었던 주제, 정국변화에 따라 논쟁의 주도측은 변화하였으나 국왕도, 서인과 남인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문제해결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갑인예송 당시 국왕이 예송의 처분을 뒤집었고, 숙종의 조치로 집권세력이 연이어 교체되자 국왕과 서인, 남인간의 역학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변화해갔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왕과 신료집단, 혹은 붕당 간의 대립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각 정치 주체들이 어떻게 정치적 타협과 제휴를 통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송에서 庚申換局에서 이르는 시기의 정치구조를 국왕 혹은 외척, 집권 남인 등 특정 세력의 권력강화의 측면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왕과 각 정치세력들이 제휴와 견제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예송을 통해 변화한 정국은 換局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현상

의 근거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는 국왕이 단순한 調劑 혹은 保습을 통해 붕당을 진정시키는 소극적인 정국운영방식을 탈피하고, 禮論과 같은 명분이 아닌 換局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한 수단을 통해 다양한 세력들과의 적극적인 연합과 제휴를 통해 집권세력을 교체하는 새로운 政治地形이 태동하고 있었던 시기로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그 과정에 개입했던 다양한 요소들, 곧 禮訟이라는 사상적 요소, 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변화양상, 국왕의 정치적 위상변화 및 정국운영양상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二. 己亥禮訟 : 국왕의 위상을 둘러싼 논란의 점화

1659년(현종 즉위년) 孝宗의 승하 및 1674년(현종 15) 효종비 仁宣王后의 승하이후 전개된 두 차례의 예송은 17세기 중반 조선사회 최대의 쟁점이었으며, 이후 의 정치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당시 사대부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던 禮論이었으며,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던 인물이 當宇 顯宗의 부왕이었던 효종이었기 때문이었다. 효종의 母后이자 대왕대비였던 莊烈王后가 입는 服制는 효종의 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현종의 위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昭顯世子の 아들인 慶安君이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²⁵⁾ 효종의 정통성이 훼손된다면 현종의 위상 역시도 잠재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해예송이 처음부터 효종의 정통성을 둘러싼 집단적 정치적 갈등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²⁶⁾ 효종에 대한 대왕대비의 복제에 대한 언급은 효종 승하 다음날에 禮曹로부터 처음 제기되었다. 《國朝五禮儀》에 승하한 大行大王을 위해 모후가 입는 복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왕세자였던 현종이 宋時烈 및 宋浚吉에게 이 문제를 문의하도록 지시하였고, 兩宋 및 대신들이 복제 문제를 논의하였다.²⁷⁾ 이 과정에서 대신들은 時王의 제도를 따라

25) 慶安君(慶安君) 이회(李檜)는 현종이 즉위하기 직전 효종에 의해 군(君)으로 봉해졌다. 《孝宗實錄》 권21, 효종 10년 윤3월 甲子

26) 이러한 예송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緒論에서 언급하였듯 기존에 많은 수의 논고가 제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27) 《國朝五禮儀》 「凶禮」의 ‘服制’ 조항에는 王妃와 王世子嬪 이하의 복제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大妃나 大王大妃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國朝五禮儀》 권8, 「凶禮」 ‘成服’ (景文社 영인본 254~256)

基年服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송시열은 여기에 四種說을 덧붙여 古禮에 비추어 보더라도 효종이 ‘體而不正’이 되므로 대왕대비가 효종을 위해 3년복을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송시열은 효종을 ‘체이부정’으로 정의하면서 소현세자의 아들이 ‘正而不體’가 된다고 하였고, 영의정 鄭太和는 이것이 예설로서는 옳을지 몰라도 소현세자의 아들이 생존한 상황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여 논의를 중단시켰으며, 결국 國制를 따라 기년복이 채택되었다.²⁸⁾

이 때 사종설에 비추어 볼 경우 효종이 ‘체이부정’이 되어 모후가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주장은 효종의 정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다. 사종설이란 承重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체이부정’은 그 중에서도 庶子를 세워 후사를 삼았을 경우를 가리킨다.²⁹⁾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식으로서 ‘體’를 이었어

쪽)

28) 《經國大典》 「禮典」 ‘五服’의 규정에 의하면 아들은 장자와 차자의 구분 없이 期年服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문제를 봉합할 수 있었다. 《顯宗實錄》 권1, 현종 즉위년 5월 乙丑 참조.

29) 《儀禮註疏》 권11, 「喪服」 “雖承重不得三年有四種，一則正體不得傳重，謂適子有廢疾，不堪主宗廟也。二則傳重非正體，庶孫爲後是也。三則體而不正，立庶子爲後是也。四則正而不體，立嫡孫爲後是也。”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사종설을 복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애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儀禮註疏》의 사종설은 생존한 아버지가 사망한 아들을 위해 입을 服에 대해 논한 것으로, 모후인 장렬왕후의 상복을 결정할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후대에 丁若鏞이 지적한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식이 죽었을 경우 할아버지의 重은 아직 아버지에게 있고 죽은 자식은 傳重되지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가 먼저 죽고 傳重하였던 자식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경우가 있을 수 있었기에, 《儀禮註疏》의 해당 구절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與猶堂全書》 第三集禮集 권19, 「喪禮外編」 ‘正體傳重辨’(一) “母爲長子三年者，決不當引用。何者。彼本爲將傳重者立文，謂經文，母爲長子，則乃或有已傳重者矣。”

도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嫡孫이 아니므로 ‘不正’이 되어 3년복을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³⁰⁾ 그 결과 효종이 인조에 비추어 ‘체이부정’이 된다는 주장은 효종이 庶子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복제논쟁에 ‘체이부정’을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단초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體’와 ‘正’의 정확한 의미가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 효종의 위상을 ‘不正’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으로 효종의 정통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儀禮註疏》의 傳에서는 단지 長子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 이유로 ‘위로 正體이기 때문’이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正’과 ‘體’의 명확한 의미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송시열이 賈公彥의 疏를 근거로 하여 ‘適(혹은 嫡)’을 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正’을 판단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계승하는 것을 ‘體’의 요건으로 규정한 뒤 효종은 인조의 아들이기 때문에 ‘體’는 되지만 큰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不正’으로 판단으로써 후일 嫡統과 宗統을 구분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를 남겨놓았다.³¹⁾

또 다른 문제는 ‘체이부정’의 요건이었던 庶子의 의미였다. 庶子는 衆子와 妾子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었으며, 《의례주

30) 이와 같은 주장은 송시열과 예론적 입장을 같이했던 송준길과 김장생의 문답 가운데서 발견되며, 송시열의 주장 역시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沙溪全書》 권37, 「儀禮問解」 ‘斬衰’ “凡正禮在乎上者, 謂下正猶謂庶也. 正體謂祖之適也, 下正謂禰之適也. 雖爲禰適而於祖猶爲庶, 故禰適謂之爲庶也.” 여기에서 김장생이 주자의 말이라고 언급한 것은 《禮記集說》 권 85에서 확인되나, 권 81을 보면 첫 두 구절이 鄭玄의 說에도 동일하게 나오며, 나머지 구절은 孔穎達의 說에도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자를 첨삭한 것으로 보인다. 《禮記集說》 권81, 권85 참조.

31) 정약용은 가공언이 근거도 없이 ‘體’를 부자 간의 계승관계에 해당시켰다고 비판하고, ‘正體’라는 것은 단지 자신으로부터 할아버지까지 소급하여 적장자로 서로 계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與猶堂全書》 第三集禮集 권19, 「喪禮外編」 ‘正體傳重辨’ (一) 참조.

소》에도 庶子の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³²⁾ 논자에 따라서는 庶子を 妾子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며, ‘체이부정’의 논리를 들어 효종에 대한 모후의 복제를 기년복으로 주장할 경우 자칫 효종을 妾子로 여기는 불경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을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당시 복제 결정을 주도했던 정태화와 송시열이 굳이 ‘체이부정’을 결정의 근거로 명시하지 않고 국제만을 언급하였던 것은 이들 역시 庶子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애초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송시열이 ‘체이부정’을 언급하였던 것이 빌미가 되어 이후 예송의 중심은 庶子の 의미를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갔다. 기년복에 대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였던 許穆이 상소를 통해 ‘嫡子라는 개념은 大夫와 士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天子와 諸侯에게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으며, 천자와 제후는 嫡妻의 후손이라면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을 세웠을 경우라도 長子가 되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父爲長子] 3년 복을 입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논쟁의 시작이 되었다.³³⁾ 이에 송준길이 둘째 嫡子 이하는 庶子라고 통칭한다고 반박하자³⁴⁾, 허목은 다시 상소를 올려 庶子は 妾子를 호칭한 것이라는 구절을 들어 다시금 반론을 펼쳤다.³⁵⁾

32) 《儀禮註疏》의 注에서는 ‘庶子は 아버지의 후사가 된 사람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庶라고 한 것은 현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으며, 疏에서는 ‘현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한 것은, 庶子は 妾子を 가리키는 것으로 適妻 소생의 둘째 아들 (이하)는 衆子라고 한다. 지금 그 이름을 같이 한 것은 庶子和 長子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며, 이 때문에 妾子和 같은 이름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곧 해석에 따라 庶子を 衆子로 볼 수도, 妾子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가공언의 疏에 대한 신뢰도 여부에 따라 庶子の 해석이 달라질 소지가 충분하였다. 《儀禮註疏》 권11, 「喪服」 “此言爲父後者, 然後爲長子三年, 重其當先祖之正體, 又以其將代己爲宗廟主也. 庶子者爲父後者之弟也, 言庶者, 遠別之也.”; “言庶者遠別之也者, 庶子妾子之號, 適妻所生第二者是衆子, 今同名庶子, 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也.”

33)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3월 辛未

34)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3월 丙子

이후 예송의 주요 논점은 《의례주소》에 나온 庶子에 대한 해석의 문제, 次嫡子도 통틀어 庶子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庶子라면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학적인 대립으로 한정되어 전개되었다.³⁶⁾ 허목의 상소가 논란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대신들이 국제를 근거로 期年을 주장하였던 것 역시 논란의 확산을 예방하고, 논점을 학술적인 대립으로 국한시키는 데 기여하였다.³⁷⁾

당국자들이 예송의 정치적 의미를 축소시키려 했던 것은 논쟁의 진행 방향에 따라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송의 중심에 庶子에 대한 해석 여부가 놓여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효종의 정통성 자체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정면에서 언급하는 것은 人臣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큰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대신들 및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을 妾子로 폄훼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古禮에 대한 논쟁보다는 《實錄》에서 선례를 찾아 참작함으로써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였다.³⁸⁾ 현종 역시 복제논쟁이 발생한 초기부터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당시의 결정은 《국조오례의》에 따랐다는 것만을 강조함으로써 禮를 빌미로 소요를 야기하는 것을 경계하였다.³⁹⁾

35)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甲午

36)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庚子 “(前略)今日所爭, 只是次嫡通爲庶子與否及既爲庶子, 則當服期與否而已.(後略)”

37)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庚子(同上) 참조.

38) 모후보다 먼저 승하한 왕으로는睿宗과 仁宗이 있었는데, 예종의 경우 次長子로서 국왕으로 즉위하였다는 점에서 효종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들이 흥서한 후 모후가 어떤 복을 입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보면 暮年服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 탈초본 9책, 현종 15년 7월 丙子 참조.

39) 《顯宗實錄》 권12 현종 7년 3월 乙巳. 다만 현종이 여기에서 五禮儀를 따랐다고 주장한 것은 《經國大典》에 근거하여 복제를 결정하였다는 실제 처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예송 초반에는 현종이 예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660년(현종 원년) 남인 尹善道の 상소였다. 윤선도는 송시열과 송준길의 주장대로라면 宗統과 嫡統이 둘로 갈리게 되며, 그 결과 효종이 嫡과 長이 되지 못하여 편안하지도, 부유하지도, 높지도, 영화롭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난하였다.⁴⁰⁾ 이 상소는 기년복을 주장하던 서인들을 인신공격함으로써 예학논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던 당시 상황을 정치적 분쟁으로 비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윤선도는 삭탈관작되고 流刑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았다.⁴¹⁾

윤선도의 상소가 불러온 가장 중요한 여파는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이를 계기로 예송의 성격을 예설을 연구하는 학자 개개인의 학술적 논쟁에서 정치적 대립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있었다.⁴²⁾ 하지만 윤선도의 상소가 불러온 여파는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이 이후 2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기와 사안에 따라 그 정치적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정국변화 양상과 함께 그 정치적 파급력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복제 문제가 거론된 초기에는 송시열과 송준길이 현종에게 자신의 예설을 개진하면 허목이 이를 반박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에 대해 대신들 및 원임 대신들이 자신의 의견을 현종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정 공신인 元斗杓가 허목의 의견을 지지하여 3년복을 입을 것을 주장하였으며⁴³⁾, 서인 산림 朴知誠의 姪壻이자 문인이었던 權謨 역시 3년의 복제를 주장하는 등⁴⁴⁾ 당색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복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다.

40)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壬寅

41) 李成茂, 앞의 논문, 50쪽.

42) 李成茂, 앞의 논문, 50쪽; 李迎春, 1998, 앞의 논문 229쪽.

43) 주 8)과 동일;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5월 乙卯

44)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戊申

그러나 윤선도의 상소 이후 복제에 대한 의견개진 자체가 점차 경색되고, 윤선도에 대한 옹호가 일어날 경우 집단적인 비판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상황 확산되는 등 예송이 점차 정치적 문제로 변모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윤선도의 상소 이후 윤선도에 대한 조정의 비판이 가중된 상황에서 권시가 윤선도를 伸救하는 상소를 올리자⁴⁵⁾ 서인의 領袖 김장생의 증손인 金萬基가 윤선도와 권시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으며,⁴⁶⁾ 역시 서인 계열의 俞檠 역시도 이들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⁴⁷⁾ 이듬해에 趙綱이 다시금 윤선도를 두둔하는 상소를 올리자⁴⁸⁾ 조경을 비판하는 상소와 옹호하는 상소가 연이어 올라오며 정국의 핵심이 3년복과 기년복의 판단 여부에서 윤선도를 둘러싼 집단적 갈등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윤선도를 둘러싼 논란은 1661년(현종 2) 조경을 비판한 사헌부 掌令 尹飛卿에 의해 더욱 고조되었다. 윤비경은 이미 윤선도의 상소 때 윤선도를 국문할 것을 주장하였으며,⁴⁹⁾ 권시가 윤선도를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에도 그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⁵⁰⁾ 윤선도 비판의 선두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이 때 조경이 윤선도를 옹호하는 상소를 올리자 윤비경은 다시금 조경 및 앞서 윤선도를 친구하였던 大司憲 趙壽益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⁵¹⁾ 이 상소에서 윤비경은 조경에게 죄를 가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沈之源⁵²⁾까지 비난하였으며, 그 결과 대신들 및 대간들이 연이어 引避하여 체직을 청하는 등 논란이 극에 달하였다. 결국 대신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윤비경을 護軍으로 체

45) 주 16)과 동일

46) 《顯宗改修實錄》 권3, 현종 원년 4월 己酉

47) 《顯宗改修實錄》 권3, 현종 원년 5월 乙丑

48) 《顯宗實錄》 권4, 현종 2년 4월 庚子

49)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乙巳

50)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癸丑

51) 《顯宗實錄》 권5, 현종 2년 5월 乙卯

52) 《顯宗實錄》 권5, 현종 2년 4월 癸卯

직시키고⁵³⁾ 윤비경의 과격한 언사를 문제 삼는 것으로 논란을 봉합하고자 했으나, 윤선도와 조경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전히 조야에 남아있었다.⁵⁴⁾

윤비경을 둘러싼 일단의 논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윤비경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顯宗實錄》에서는 윤비경이 계책을 동원하여 조경을 공격하고 그 결과 資級이 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조경에게 모욕을 가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顯宗改修實錄》에는 이와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肅宗 즉위 후 본격적인 환국이 일어나며 집권 붕당이 교체되고 있던 각 실록의 편찬 상황에서 연유하여 각 붕당의 시각이 소급되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윤비경을 기년복을 주장하는 서인들의 선봉으로 평가하는 기록⁵⁵⁾들이 존재하는 한편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한 후 《현종개수실록》을 편찬할 때 윤비경을 비난했던 《현종실록》의 관련기록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이때의 논란이 붕당 간의 대립의 전조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곧 당시부터 윤비경은 윤선도와 조경을 비난하는 대간의 선두에 서 있던 인물로

53) 《承政院日記》 탈초본 9책, 현종 2년 5월 乙丑; 《承政院日記》 탈초본 9책, 현종 2년 5월 丙寅

54) 《顯宗改修實錄》 권5, 현종 2년 5월 癸亥

55) 개인의 문집에 실린 내용이므로 그 편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허목이 조경의 神道碑에서 윤비경을 用事者들에게 아첨하는 자라고 비난하였으며, 윤비경이 인피하며 대신을 배척한 것을 송준길이 사주한 것으로 여기는 여론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반대측에서는 윤비경을 기년설의 선봉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경이 악인들의 黨이 되어 정치적 분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조경과 윤비경의 갈등이 3년복을 주장하는 집단과 기년복을 주장하는 집단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이 때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記言》 권 40 「東序」 ‘龍洲神道碑’ “尹飛卿, 郭之欽等, 媚事用事者, 爭以攻擊爲功.”; 《宋子大全》附錄 권4 「年譜」3 “趙綱疏後, 先生連以犯染不克上章引罪, 而兩司論綱黨惡傾軋之罪, 大臣請對救之. 掌令尹公飛卿, 引避斥大臣, 上下嚴旨, 大臣又上筭論詆, 兩司又指斥同春, 若以尹公之避出於同春之所指使者然. 同春決意請去, 先生蹤跡益不安, 遂上疏待罪, 上賜批慰諭.”

인식되고 있었으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윤비경을 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윤선도가 강한 처벌을 받은 이후 표면적으로 격렬한 조정의 분열은 줄어들었으나, 논란 자체는 끊이지 않았다. 1663년(현종 4) 洪宇遠이 윤선도의 주장을 옹호한 상소⁵⁶⁾와 1666년(현종 7) 金壽弘이 庶子에 대한 허목의 주장을 변론한 편지⁵⁷⁾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때마다 臺諫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여론이 조정에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서인의 攻斥이 윤선도 개인과 그 옹호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윤선도를 공격하는 죄목은 그 표현의 거침과 反座에 있었으며,⁵⁸⁾ 윤비경마저도 윤선도의 禮論 자체보다는 禮論에 假託하여 자신의 ‘凶計’를 드러냈다는 것에 있었다. 계속되는 논란 역시 윤선도와 그 옹호자에 집중되었을 뿐⁵⁹⁾, 3년설을 주장하였던 許穆이나 尹鑄에 대한 비난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윤선도를 기화로 일어난 논란은 서인들의 결집을 어느 정도 불러오기는 하였으나, 아직 광범위한 봉당간 대립으로까지 전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편 예송이 점차 정치문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조짐은 조정에서 뿐 아니라 재야에서도 감지되었다. 경상도 유생 柳世哲을 疏頭로 기해년의 복제 결정을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오자⁶⁰⁾ 조정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어 館學 유생 洪得禹가 유세철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충청도 생원 尹擇, 전라도 유생 安崙, 함경도 유생 朱汝翼, 상주

56) 《顯宗實錄》 권6, 현종 4년 4월 丙辰

57) 《顯宗實錄》 권11, 현종 7년 2월 壬申. 김수홍은 金尙憲의 형이자 우의정이었던 金尙容의 손자로 金壽興, 金壽恒과 6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인들과 달리 3년설을 지지하는 등 당색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던 인물로 보인다.

58)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乙巳

59)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癸丑

60) 《顯宗實錄》 권12, 현종 7년 3월 癸卯

유생 成震昇 등 관학과 지방의 유생들이 유세철을 비판하는 상소를 연이어 올리는 등 논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⁶¹⁾ 이처럼 예송이 재야의 유생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⁶²⁾ 현종은 禮를 언급하여 소요를 일으키면 형벌로써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⁶³⁾ 이후 유생들에 의한 상소는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야의 유생들에 의해서까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예송이 조정의 관료들 뿐 아니라 그 모집단이었던 사림 전반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전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해예송 이후 점차 논란이 과열되는 와중에도 현종은 윤선도를 극변으로 유배를 시킨 것을 제외하면 예송의 당사자들에 대해 체직이나 파직 이상의 처벌을 내리지 않았으며, 각 개인들의 경솔한 언사를 책망하는 선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분란을 야기하여 조정을 분열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와 함께, 효종의 정통성 문제를 공론화하길 원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종 자신의 즉위 2개월 전에 소현세자의 아들인 慶安君이 복권되어 있었으며, 그가 현종 4년(1663)과 6년(1665)에 각각 臨昌君과 臨城君을 낳은 상황에서 효종의 적통 문제가 어떻게든 거론되는 것은 현종으로서의 달가운 일일 수 없었다. 게다가 윤선도의 상소를 통해 복제 논쟁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은

61) 《顯宗實錄》 권12, 현종 7년 3월 乙巳; 《顯宗實錄》 권12, 현종 7년 4월 己巳; 《顯宗實錄》 권12, 현종 7년 5월 丙申; 《顯宗改修實錄》 권15, 현종 7년 6월 癸亥; 《顯宗實錄》 권12, 현종 7년 6월 戊寅

62) 현종대 재야 유생들이 禮訟에 관한 상소를 올림으로써 公論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薛錫圭, 2002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20~224쪽 참조.

63) 《顯宗實錄》 권12, 현종 7년 3월 乙巳. 그러나 현종의 이러한 명에도 불구하고 유생들의 상소가 이어졌으며, 현종은 조정의 처사는 모두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답하며,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학업에 전념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承政院日記》 탈초본 10책, 현종 7년 5월 丙申 참조.

이후 현종 및 대신들은 문제가 확산되어 붕당 간 알력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현종은 애초의 논리, 곧 ‘國制’를 들어 논쟁을 원천봉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두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예송이 붕당 간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예송이 점차 정치문제화하고 있었음에도 붕당간의 전면적인 대립으로까지 치닫지 않았던 것은 기존 정치관행에도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선조대의 동서분당 이후 붕당의 대립이 점차 가속화되고는 있었으나, 文廟從祀 등 각 붕당의 학문적 명분이 걸린 문제를 제외하면 당론보다는 각 개인의 정치적 · 학문적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었으며, 당론은 그보다는 부차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다. 인조대 元宗追崇 당시 서인과 남인이 함께 원종의 추송을 반대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예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⁶⁴⁾ 효종대 金堉의 墓에 隧道를 쓴 일이 논란이 되었을 때 金左明, 曹漢英과 閔維重, 宋時烈이 대립하던 상황 등을 볼 때, 현종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인이라는 범연한 당색으로 묶여있는 집단 내부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음을 볼 수 있다.

기해예송이 극심한 당론대립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은 또 원인에는 당대의 정치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서인과 남인이라는 커다란 명목으로 당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서인과 남인 내부에도 서로 학문적 ·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인물들끼리 다시금 소규모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서인의 경우 인조반정 이후부터 무수한 내부 분열을 겪었으며, 당시에는 漢黨과 山黨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⁶⁵⁾ 이 때문에 漢黨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金左明은 은연중 3

64) 김세봉, 앞의 논문, 181~213쪽 참조.

65) 漢黨과 山黨의 대립 및 서인 내부의 분열 양상에 대해서는 鄭萬祚, 1999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년설을 지지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⁶⁶⁾

남인 역시 대표적 인물이었던 許積과 許穆, 尹鑄 등의 노선 역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허목과 윤희가 서인과 그들의 예설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보였던 데 비해 허적은 온건한 모습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서인정권에서 出仕하는 등 정치적으로 일관된 지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현종 4년(1663)과 이듬해에 걸쳐 일어난 公義 · 私義 논쟁이었다.⁶⁷⁾ 副修撰 金萬鈞이 조모의 피화 사실을 들어 淸使 接賓 의식에의 陪從을 거두어주길 청했던 데에서 비롯된 이 사안은 서인 내부에서 상당한 정치적인 진통을 불러온 사건이었다. 예론을 둘러싸고 남인이 산발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公義와 私義, 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서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이 논쟁은 1660년대의 정치구조가 서인과 남인이라는 이항대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이 서인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세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鄭萬祚, 1999 〈朝鮮 顯宗朝의 公義 · 私義 論爭과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國學資料院 참조.

66) 漢黨의 영수라 할 수 있는 金佐明은 윤선도가 3년복을 주장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윤선도를 두둔하였으며, 실록의 金佐明 卒記에서는 《顯宗實錄》과 《顯宗改修實錄》을 막론하고 隧道 사건으로 인해 김좌명이 윤선도의 예설을 옳다고 주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公義 · 私義 논쟁 당시 山黨을 攻斥했던 徐必遠은 윤선도를 옹호하는 홍우원의 상소를 비판하였으며, 같은 논쟁에서 서필원을 지지하여 ‘三奸五邪’의 한 명으로 지목되었던 朴增輝 역시 윤선도를 옹호했던 趙綱을 비판하며 引避한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김좌명의 입장이 漢黨 전체의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顯宗實錄》 권19 현종 12년 3월 己未, 《顯宗改修實錄》 권12, 현종 5년 11월 乙未, 23권, 12년 3월 己未; 《顯宗實錄》 권2, 현종 2년 5월 癸丑, 권6, 현종 4년 4월 丙辰 참조.

67) 公義 · 私義 논쟁의 경과와 의미에 관해서는 鄭萬祚, 1992 〈朝鮮 顯宗朝의 私義 · 公義 論爭〉 《韓國學論叢》 14 참조.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결집되지는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國制 기념으로 예설을 확정함으로써 古禮를 둘러싸고 비화될 수 있었던 논점을 봉쇄하였던 조치와,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결집과 당색이 뚜렷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기해예송은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송 과정에서 ‘체이부정’ 및 庶子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효종의 위상을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아울러 윤선도의 상소를 거치며 예송이 점차 학술적인 논쟁의 차원을 넘어서 서인과 남인이 결부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기해예송자체는 격렬한 붕당 간 대립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으나, 논란의 핵심을 매듭짓지 않고 國制 기념으로 미봉하였던 당시의 처리과정은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三. 甲寅禮訟과 현종의 적극적 개입

禮를 언급하여 논란을 일으킬 것을 금한 1666년(현종 7) 이후 복제를 둘러싼 논란은 다소 진정되어 있었다.⁶⁸⁾ 그러나 1674년(현종 15) 2월 효종비 仁宣王后가 승하한 후 대왕대비의 복제가 다시 금 문제가 되어 다시금 禮訟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甲寅禮訟이다.

仁宣王后가 승하하자 예조에서는 처음 대왕대비가 齊衰 暮年服을 입어야 한다는 單子를 올렸다가,⁶⁹⁾ 2월 28일 暮年服 부분을 大功服으로 고치는 付標를 붙여 올리겠다고 하여 현종의 유히를 받았다.⁷⁰⁾ 暮年(1년)으로 정했던 복제를 大功(9개월)로 강등시키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예조에서는 변경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차후 논란의 소재가 되었다.

이에 대해 《顯宗實錄》에서는 대왕대비가 인선왕후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인선왕후를 長子妻로 보는 것이며, 이는 己亥年(1659) 당시 효종을 庶子로 보았던 송시열의 주장과 상반되기 때문에 송시열의 偏黨들의 위협에 의해 예조판서 趙珩이 大功服으로 바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顯宗改修實錄》에서는 송시열이 효종을 長子가 아니라 衆子로 보았으며, 이 경우를 동일하게 적용할

68) 1672년(현종 13) 濟用監正 趙嗣基가 기년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하옥되었으며, 의금부에서는 그에게 3년의 徒刑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遠地에 유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를 다시 서용하는 등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顯宗實錄》「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行狀」; 《練藜室記述》 권31, 「顯宗祖故事本末」 ‘儀禮爲長子之喪服圖’

69) 《仁宣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殯殿都監儀軌」 ‘禮曹單子’ “大王大妃殿 齊衰暮年”. 이 단자를 올린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2월 28일에 “臣等昨於服制節目中”이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2월 27일에 단자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70)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2월 壬戌; 《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5년 2월 壬戌

경우 인선왕후 역시도 長子婦에 대한 복제가 아닌 衆子婦에 대한 복제를 적용해야 하였기 때문에 개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모두 실록 편찬 과정에서 후대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며, 당시 예조가 복제를 변경한 근거로 속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⁷¹⁾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것은 효종의 국상 때 복제의 근거로 들었던 《경국대전》의 상복 규정이었다. 己亥年 때와 마찬가지로 《국조오례의》에는 王大妃에 대한 大王大妃의 상복 규정이 없었기에, 이때에도 참작할 수 있는 국가 제도는 《경국대전》 뿐이었다.⁷²⁾ 그런데 《경국대전》 「예전」 ‘五服’條에 子는 장자와 중자의 구분 없이 기년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子婦의 경우 長子妻는 기년, 衆子妻는 대공복을 입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효종의 경우 국제에 따라 장자와 중자를 가리지 않고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인선왕후는 장자처인지 중자처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복제를 결정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런데 예조에서는 복제를 변경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만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부표하여 올렸을 뿐이라고만 하였으며, 이에 현종은 성복을 하루 앞두고 복제를 변경하여 시일을 지체하게 만든 죄를 물어 예조의 당상과 낭청을 拿問하도록 지시하였다.⁷³⁾ 이후 대왕대비는 대공복으로 成服하고 국장을 마쳤으며, 동일한 죄목으로 拿囚되었던 예조판서 趙珩 역시 의금부에서 照律하여 죄를 주도록 하였으나 이내 사면되었다.⁷⁴⁾

71)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2월 壬戌; 《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5년 2월 壬戌(同上)

72) 《國朝五禮儀》에 나와 있는 복제 규정은 국왕에 대한 것이며 소주(小註)에 ‘내상(內喪)’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내상’이 왕비만을 칭하는 것인지 왕대비 이상을 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이 때 문제가 되었던 복제가 왕대비에 대한 대왕대비의 복제였기에 이에 대한 규정은 《國朝五禮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73)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2월 壬戌

그러나 대왕대비의 복제를 대공복으로 결정한 것은 己亥年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으며, 결국 7월 16일 대구 유학 都愼徵의 상소⁷⁵⁾를 기화로 다시금 예송이 벌어졌다. 도신징은 이 상소에서 대왕대비가 인선왕후를 위해 대공복을 입었다는 것은 인선왕후가 衆庶婦라는 것이며, 이 경우 인선왕후의 아들인 현종은 衆庶孫이 되지만, 후일 대왕대비가 승하하였을 때 傳重한 입장에서 嫡長孫으로 자처하지 않을 수 없기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신징의 지적은 기해예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대통을 이어 국왕이 되었다면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長子로 보아야 하는지, 승통 여부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衆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문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효종을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서손’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이 문제가 當宁 현종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었다.

이에 현종은 기해예송 때와는 달리 당시의 문제는 효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신하들을 공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복제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기해예송 당시에는 효종이 장자인지, 중자 혹은 서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 다만 국제와 時王의 제도에 의해 복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현종이 이 때에는 적극적으로 효종이 인조의 長子라는 점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종의 의지는 몇몇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실록 考出에 대한 현종의 태도에서 이러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현종은 《국조오례의》나 《경국대전》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실록을 상고하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일단 윤택하였으나 이튿날 강화도에서

74)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3월 癸巳;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4월 乙未

75)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7월 戊辰

실록을 검토해 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논의를 먼저 한 후 실록을 살펴보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실록을 상고할 관료가 출발하기도 전에 효종이 ‘體而不正’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기년복으로 복제를 변경하였으며,⁷⁶⁾ 실록을 考出할지 여부를 묻는 승정원의 질문에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교를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현종의 의도는 명확한 典據가 될 수 없는 실록을 굳이 참작하지 않고⁷⁷⁾ 자신의 뜻에 따라 서인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기년복으로 복제를 확정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짐작된다.

기해예송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결과 불태워졌던 윤선도의 상소를 다시 상고하고자 하였던 것 역시 적극적으로 예송에 개입하여 기년복을 관철시키고자 한 현종의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⁷⁸⁾ 윤선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해예송 때 예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효종에 대한 불경한 언사를 사용하고 과격한 주장을 펼쳐 커다란 비난을 받았으며, 예론을 펼쳤던 신하들 중 유일하게 중형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의 상소를 국왕이 다시 살펴보고

76)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7월 乙亥, 丙子, 丁丑;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7월 戊寅

77) 기해예송 당시 실록을 考出하였으나 적용할 만한 명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현종의 판단에 일조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賓廳에서 언급한 將順王后나 恭惠王后의 경우 中殿이었을 때 승하하였다는 점에서 王大妃로 사망한 인선왕후와는 차이가 있다.

78) 그러나 윤선도의 상소를 모두 소각했던 까닭으로 상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종이 윤선도의 상소를 보고자 했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도신징의 상소 이후 7일 이후 대신들과 대왕대비의 복제를 놓고 의논하였으며, 그로부터 사흘만에 개정한 사실과 《記言》의 기록을 보았을 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윤선도의 상소를 보고자 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8월 乙未; 《記言》別集 권19 「丘墓文」 ‘海翁尹參議碑’ “仁宣王后薨, 太王太后服妾子婦大功, 儒生都慎徵上疏言, 古禮經文不然, 上覺之, 乃親考經文, 命入善道庚子論禮疏, 而既焚之闕下, 亦不載實錄, 不入也.”

자 하였다는 것은 國制의 논리에 묻혀 있던 長子와 衆子, 그리고 庶子에 관한 논의를 현종이 직접 再考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며, 이는 다시금 효종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 예송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현종의 입장 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기해예송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현종이 갑인예송 때에는 33세로서 원숙한 경륜을 갖추게 되었던 것을 그 한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또한 갑인예송이 있기 1년 전인 1673년(현종 14)에 明善公主와 明惠公主⁷⁹⁾의 상례를 겪었으며 閔愼의 代服 사건⁸⁰⁾ 등을 겪으며 의례에 대한 현종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던 것도 다른 원인의 하나였다. 특히 민신 대복 사건을 통해 현종은 부자간의 의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士庶人과 제왕가의 경우가 다르다고 언급함으로써 국왕의 承統과 복상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다.⁸¹⁾ 또한 명선공주의 부마로 내정되었던 孟萬澤의 駙馬 位號 존속 문제에 있어서도 신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의 작호를 존속시키면서도 再娶는 막지 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의례의 결정에 있어 점차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⁸²⁾

79) 明善公主는 현종의 첫 딸이며 明惠公主는 두 번째 딸로, 모두 혼례를 앞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죽었다.

80) 閔愼의 大服 사건이란 前敎官 閔欒이 죽은 후 그의 長子 閔世益이 狂症이 있는 상황에서, 민세익의 동생과 친분이 있던 송시열이 민세익이 長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판단하여 민세익의 아들 閔愼으로 하여금 대신 斬衰복을 입도록 조언한 일이 있었는데, 김우명이 이는 綱常倫理에 어긋난 일이라고 현종에게 아뢰었으며, 송시열이 다시 이에 반박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건을 말한다. 《練藜室記述》 권31, 「顯宗朝故事本末」 ‘閔愼代父服斬’ 참조.

81) 《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4년 9월 己卯 “朱子之論士庶人之禮詳矣，而無此論，此必但指寧宗也。帝王家以社稷爲重，固有與士庶不同者也。”

82)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4년 8월 乙巳 “第念爵號一款，今之議者，雖以禮經，斷以爲言。予則以爲有必不盡然者，帝王家禮節，或有未

더욱 중요한 원인은 長子妻와 衆子妻에 대한 복제를 다르게 규정
한 《경국대전》의 조항이었다. 인선왕후에 대한 복제를 碁年 혹은
大功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인선왕후가 長子妻인지 衆子妻인지
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것이었으며, 자연스레 효종의 위상 역시 長
子와 衆子 중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곧 아들에 대해서는 長
子와 衆子の 구분이 없었던 《경국대전》을 근거로 효종에 대한 기
년복을 결정했던 기해예송 때와는 달리, 인선왕후의 국상 당시에는
국제를 근거로 미봉책으로 일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현종은 스스로 경전을 근거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예론을
주장하였다.⁸³⁾ 특히 서인들의 대공복 주장 및 기해예송 당시의 예
설을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는 현종이 스스로 父王의 위상을 長
子이자 嫡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인조에 대한 嫡長孫으로 자처하고
자 하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상이 賓廳이 아뢴 내용에 대한 批答을 구두로 부르면서 [金-필자]錫
胄에게 명하여 받아쓰게 하였다. “기해년에 服制를 議定할 때에 長子,
衆子에 관한 설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다만 마땅히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상소에 대한 覆啓로 인하여 收議할 때 그 설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가에서 채택하여 시행한 사안이 아니었다. 지금 복제
를 議定할 때에 와서 감히 衆庶니, 大功이니 하는 설을 말하는데, 《大
典》의 五服 조항에는 承統에 관한 항목이 없으니 비록 時王이 만든
예제이지만 이 부분은 미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교가 있었다는
핑계로 禮經을 참고하지 않았으니, 오늘 회의는 그 의의가 어디에 있
겠는가?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자세히 살펴 議啓하라.” 하였다.⁸⁴⁾

盡節目也，何者，駙馬之不得再娶，亦在於禮經耶？自是權道，論以士夫家通
行之禮，不亦異乎？”

83) 《顯宗實錄》「行狀」“黨時烈者，又以爲先後異制，屬禮官趙珩等，以大
功改付標以入，蓋用庶婦之制也。王以前後顛倒，囚治禮官，然功制亦行。至
是有賓廳會議之舉，七月十三日也，王旣發悟，聖意赫然，親考禮經，以禮疏，
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亦名長子之文，爲主，而大王大妃，改服碁制。”

여기에서 현종은 己亥年(1659년) 효종의 국상 당시의 복제를 정할 때에는 효종이 長子인지 衆子인지를 따져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衆子, 庶子에 대한 해석 문제는 《경국대전》에 실려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의논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해예송 당시의 복제는 효종을 ‘衆子로서의 庶子’로 본 서인의 주장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인의 예론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효종이 衆子이기는 하지만 소현세자의 사후 대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長子가 되며, 따라서 《경국대전》의 長子妻 복제 규정에 따라 대왕대비가 입을 복제를 기년복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장이었던 것이다.

대공복에 대한 현종의 논박은 이제 스스로 서인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현종은 영의정 金壽興⁸⁵⁾과의 대화에서, 대왕대비가 姜氏⁸⁶⁾를 위해 기년복을 입지 않았는데 인선왕후를 위해서 대공복을 입고 나면, 대왕대비는 누구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냐⁸⁷⁾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서인의 예설대로라면

84) 《顯宗改修實錄》 권28, 현종 15년 7월 丙子 “上口號賓廳啓辭之批, 命錫胄書之曰, 己亥服制議定之時, 未聞有長衆之說. 但於當服三年疏覆啓, 收議時有之, 而此非朝家採施之事. 到今服制議定時, 敢發衆庶大功之說, 《大典》五服條, 無承統一款, 則雖曰時王制禮, 此乃未備之處. 而諉之下教, 而不爲參考禮經, 今日會議之意安在? 以此更爲詳審議啓.”

85) 金壽興은 당시 영의정이었을 뿐 아니라, 인선왕후 국상 당시 摠護使로써 국장 전반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대왕대비의 복제에 대한 賓廳 회의를 주도하였으며, 현종의 비판 역시 김수홍을 향해 있었다.

86) 昭顯世子の 嬪이었던 姜氏(숙종대 愍懷嬪으로 복위)를 말한다. 당시에는 인조대 逆律로 賜死된 상태가 유지되었기에, 현종은 ‘逆姜’이라고 부정적으로 지칭하였다.

87)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7월 丙子 “大王大妃殿, 旣無爲逆姜服之之事, 葦年服, 歸於何處耶?”

대왕대비는 嫡妻 소생의 아들과 그 며느리가 두 쌍이 있으며, 그들의 상을 모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長子妻를 위한 服을 입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현종은 은연중에 기해예송 당시 송시열과 송준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었다. 송시열은 승중을 한 長子가 죽어 斬衰服(3년복)을 입었다면 長子가 죽은 후 次長子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斬衰服을 또 입을 수는 없다고 하며 ‘不貳斬’을 언급하고, 대왕대비가 이미 소현세자의 상에 長子の 服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長子를 위한 服을 입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었다.⁸⁸⁾ 송준길 역시 소현세자의 상 때에는 3년복을 입었어야 마땅하며, 효종의 경우 3년복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었다.⁸⁹⁾ 이에 현종은 대왕대비가 인선왕후를 위해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면, 이는 소현세자의 嬪이었으나 역률로 처벌된 강씨를 위해 대왕대비가 기년복을 입어야 되는 논리로 연결된다고 하며 ‘不貳斬’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던 것이다.

현종대 내내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강씨를 현종이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은 현종이 이 사안을 부왕의 종통, 나아가 자신의 종통에 관계된 문제를 인식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인선왕후가 長子妻인지 衆子妻인지를 판단하던 논리는 효종이 長子인지 衆子인지에 대한 인식과 맥이 닿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원되고 역적의 위치에 있었던 강씨를 언급함으로써 인선왕후가 長子妻가 될

88)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庚子 “夫所謂長子死者, 未知其死於何等時耶? 謂已成人而死, 其父既爲之服斬三年, 然後又立次嫡, 謂之長子, 而其次嫡死, 又爲之服斬三年耶? 如此則其於無二統不貳斬之義, 何如耶?.....今日所爭, 只是次嫡通爲庶子與否及既爲庶子, 則當服期與否而已. 父王既以爲庶子, 而不服三年, 則雖已承統母后, 何敢獨服三年乎? 況大王大妃於昭顯之喪, 既與仁祖大王同爲長子之服, 則其義何可變於今日也.”

89)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丙戌 “昭顯之喪, 李景奭李榮等請行三年之服, 而仁祖大王答曰, 我朝無行三年之服者, 只服墓年. 臣意則昭顯之喪, 當服三年, 而於孝考之喪, 則不當服三年矣. 且大王大妃, 豈不從仁祖之意, 而行之乎?”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반론을 막았던 것이다.

또한 현종은 서인의 庶子에 대한 해석 및 ‘체이부정’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현종은 직접 《의례주소》의 관련 조항을 언급하면서 서인들의 예설을 부정하고 대왕대비의 복제를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7월 15일자 다음의 전교에 잘 드러나 있다.

庶子란 분명한 구별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四種說에 있어서의 ‘삼년을 입을 수 없다.’한 것과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父爲長子-필자]’라는 네 글자 아래에다 해석을 붙이기를, ‘둘째아들을 세우고 또 長子라고 부른다.’ 하였고, 그 아래 傳에서는 이르기를 ‘위로 보아 正體이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그래도 體而不正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啓辭에서 말한 四種說에 대하여, ‘그 첫 번째는 正體이면서 傳重을 할 수 없는 경우는 適子가 몹쓸 병이 있어 종묘를 맡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그 설이 서로 크게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賈公彥의 疏에 이르기를, ‘長子가 죽으면 適妻가 낳은 둘째아들을 세우고 또한 長子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경들은 지금 이 조항을 ‘宗廟를 맡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묘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고, ‘세우고 난 뒤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라고 한 것은 죽은 이를 두고 한 말인 것이다. 그런데 경들은 그렇게 사리에 당치도 않은 悖說을 禮律로 내세워 선왕을 가리켜 體而不正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임금에게 박절하게 대하고는 어디에다 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인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막중한 예를 그렇게 어느 특정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논법으로 定制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초에 마련했던 대로 國制의 暮年 예제를 따르도록 하라.⁹⁰⁾

90)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7월 丁丑 “庶子遠別之說, 不得貫四種不得爲三年之文矣. 父爲長子四字下釋之曰, 立第二長者, 亦名長子云, 而其下傳曰正體於上云, 其可曰體而不正耶? 啓辭中四種之說, 有曰一則正體不得傳重, 謂適子有廢疾, 不堪主宗廟云云之說, 予則以爲大相乖戾也. 賈疏既曰, 第一子死, 則取適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云, 卿等, 今日引證於不堪主宗廟之人. 不堪主宗廟者, 謂生者也, 立而亦名長子者, 謂死者也. 卿等, 以如此不近理之悖說, 定爲禮律, 指先王而體而不正, 可謂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체이부정’을 근거로 효종을 庶子로 보았던 논리에 대한 현종의 강한 비판이다. 현종은 논란이 되었던 庶子가 衆子와 같은 의미라는 주장에 대해, 衆子라 하더라도 이미 長子라고 명명하였다면 ‘正體’가 되기 때문에 ‘체이부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四種說에 관하여서도, 첫 번째 조항인 ‘適長子라 하더라도 廢疾이 들어 종묘를 주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3년복을 입어주지 않는 경우’는 살아 있을 당시 그의 위상이 이미 傳重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폐질이 없이 단지 요절하였을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소현세자가 요절하여 그 뒤를 이어 第二長子인 효종이 傳重한 것은 四種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효종은 長子가 되며, 소현세자와 효종의 관계를 四種說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자 임금에게 박하게 대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종의 주장은 논리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종이 직접 인선왕후에 대한 대왕대비의 복제를 기년복으로 결정함으로써 효종의 위상을 長子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현종은 先王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체이부정’을 거론하였던 신하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誤禮를 빌미로 인선왕후 국상 당시의 예관들을 다시금 拿鞠하도록 하였다.⁹¹⁾ 나아가 영의정 김수흥에게도 역시 책임자로서 중도부처시키는 처벌을 내렸다.⁹²⁾ 이후에도 김수흥의 중도부처를 거두어 달라는 청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김수흥을 비호했던 대사간 南二星을 珍島에 유배하는 등 복제 문제와 관련하여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였다.⁹³⁾ 결국 현종

於君而厚於何地耶? 予實痛惡也. 莫重之禮, 決不可以附托之論, 斷爲定制, 依當初磨鍊國典基年之制, 定行。”

91)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7월 丁丑

92)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7월 戊寅

93)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8월 庚戌

은 인선왕후에 대한 복제 논쟁에서 효종을 언급함으로써 스스로 효종의 위상을 결정하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趙珩을 위시한 예관들을 하옥하고 김수홍을 중도부처에 처함으로써 예론에 관한 처분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예송에 대한 현종의 태도가 변화한 것은 효종의 위상이 신하들 간의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를 내세워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송의 진행 과정에서 논쟁이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던 것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지방 유생마저 국왕의 위상을 둘러싼 논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미 효종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사실상 조야를 막론한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상황 때문이었다. 예론상 효종을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정국의 현안으로 대두된 이상 현종으로서 이를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스스로 부왕의 위상을 결정짓는 데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갑인예송 과정에서 현종은 직접 복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강경한 태도로 그 처분을 확정짓고 부왕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을 일단락지음으로써 예송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뚜렷한 변화는 갑인예송 당시의 주된 대립 축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있던 것이 아닌, 국왕과 집권 신료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⁹⁴⁾ 앞서 살펴보았듯 기해예송은 3년설을 지지하는 신료들과 기년복을 주장하는 신료들이 의견 개진과 반박을 지속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반면 갑인예송은 애초에 복제를 대공복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왕이 힐문하면 빈청에 모인 대신들 및 관련 신하들이 이를 변호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빈청회의를 주도하였던 인물은 영의정 김수홍을 비롯하여 김수항, 민유중, 김만기 등 서인 대신들이었으며,⁹⁵⁾ 앞서 살펴보았듯 복제가 기년복으로 변

94) 李迎春(1998), 259쪽.

95) 현종 15년 7월 도신정의 상소 이후 乙亥, 丙子, 丁丑 사흘에 걸쳐 갖

경되면서 최종 책임자로 김수홍이 지목되어 처벌되는 것은 자연스레 집권 서인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국왕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誤禮라는 명분적 약점을 지니고 있던 서인에 대해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처벌의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의 수세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국왕이 직접 부왕 및 자신의 위상을 놓고 서인이 장악하고 있던 대신 및 대간들과 대립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였다.⁹⁶⁾ 물론 국왕이 자신의 위상을 확정짓고자 신료들과 대립하였던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앞서 인조대에도 元宗의 追崇문제를 놓고 인조와 일부 공신, 그리고 훈척세력이 사림 일반과 대립을 벌였던 사안이 있었다.⁹⁷⁾ 그러나 원종추숭 논쟁은 종통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던 인조가 私親의 추숭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한 능동적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예송논쟁과는 차이가 있었다. 예송 과정에서 현종은 왕세손과 왕세자의 순차를 밝히 즉위하였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종의 사후 부왕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어 불가피하게 부왕의 위상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효종의 혈통적 위상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두 세력 사이에서 예론을 확정짓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효종의 위상을 결정하는 과정은 결국 효종을 장자로 보는 남인과 중자로 보는 서인 중 하나의 예설을 승인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효종의 위상에 대해 현종에게 논박을 당해 대공복설을 기각당한 서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의정 김수홍의 처벌은 서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일이었으므로, 좌승지 李端錫, 校理 趙根,

은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대부분이 이들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7월 乙亥, 丙子, 丁丑 참조.

96) 갑인예송이 현종과 대신들의 대립의 성격을 지녔으며, 당쟁적 대결보다는 宮中과 府中의 대립이었다고 본 견해로 李迎春(1998), 254~261쪽 참조.

97) 李迎春(1998), 145~175쪽 참조.

修撰 權愈 등 서인계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승정원과 삼사를 중심으로 김수홍의 신구를 요청하였던 것이다.⁹⁸⁾ 이처럼 현종이 예송에 개입하여 이들의 입지를 위축시키자 서인은 집단적으로 결집하여 이들은 신구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국왕의 외척으로 서인의 당색을 지닌 동시에 척신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金錫胄가 갑인예송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었다.⁹⁹⁾ 그는 당시 左副承旨로 국왕과 대신들의 논의 과정에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현종과 서인 대신들 간의 본격적인 논란이 있기 전 현종의 명에 의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의례주소》 및 남인들의 상소를 정리해 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석주는 庶子에 관해 송시열과 다른 해석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며, 갑인예송 초기에 예조가 복제에 관해 올렸던 계사에 衆子와 次子에 관한 말이 없었다고 현종에게 진언함으로써 은연중에 대공복 결정은 古禮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복제를 결정함에 있어 衆子와 次子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다.¹⁰⁰⁾

이처럼 김석주가 서인의 당색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종의 위상에 대해 송시열 및 그의 입론을 이어받은 대신들과 상반된

98)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7월 戊寅

99) 갑인예송과 이후의 정국에서 金錫胄가 수행한 역할에 관해서는 李迎春(1998), 271~273쪽 참조.

100) 김석주가 현종에게 올린 글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진상은 알 수 없으나, 《顯宗實錄》에서 송시열을 두둔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김석주만이 자신은 공평한 입장에서 글의 해석을 올렸다고 자평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庶子를 衆子가 아닌 妾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顯宗實錄》 권28, 현종 15년 丙子 “自宋時烈倡爲孝廟不害爲庶子之論，家談巷議之士，皆以禮律之失正，不快於心，久矣。至是遽有服制改定之命，搢紳之間，黨宋者，莫不驚惶失色。惟錫胄以其註解示人曰，我則公論之人也。今此註解，亦是據文直解而已。” 및 《顯宗實錄》 권28, 현종 15년 丙子

주장을 한 배경은 앞서 삼장에서 살펴본 서인 내부의 집단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김석주는 그 할아버지인 金堉 때부터 송시열을 위시한 소위 서인 山黨 계열과 일정 부분 대립되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漢黨 계열에 속하고 있었다. 산당과 한당의 대립은 인조대에서부터 발견되는데, 당시 한당의 영수였던 김육의 손녀이자 金佑明의 딸(후의 明聖王后)이 왕세자(후의 현종)의 嬪으로 간택되어 국혼을 맺었으나, 이것이 빌미가 되어 김우명의 형인 金佐明이 요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등 산당의 견제를 받고 있었다.¹⁰¹⁾ 이후 김육의 隧道 사건¹⁰²⁾으로 인해 김좌명·김우명과 송시열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기해예송 당시 김좌명이 윤선도의 예론을 은연중 옹호하는 등 산당과 한당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閔愼의 代服 사건 등을 통해 서인 내부의 분열 역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좌명, 김우명을 비롯한 김석주는 정치적 열세에 처해 있었는데, 현종이 金錫胄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앞서 公義·私義 논쟁에서도 불거졌던 일로, 여전히 서인이 단일한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서인 내 여론을 주도하던 송시열의 山黨係에 열세에 놓여 있던 漢黨의 영수 金錫胄는 서인 주류의 예설이 기각되는 상황 속에서, 애초에 산당 계열과 상이한 예론을 주장했던 점과 외척 기반을 근거로 산당을 위축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1) 漢黨과 山黨의 대립 및 서인 내부의 분열 양상에 대해서는 鄭萬祚, 1999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鄭萬祚, 1999 <朝鮮 顯宗祚의 公義·私義 論爭과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國學資料院 참조.

102) 金佐明과 金佑明이 그들의 아버지인 金堉의 墓에 隧道를 쓴 것이 문제가 되어 閔維重과 宋時烈 등에게 分數를 넘어선 僭禮라고 攻斥을 받고 金左明의 官職이 削奪된 사건을 가리킨다. 《孝宗實錄》 권21, 효종 10년 4월 戊戌, 丙午 참조.

김석주는 복제에 관한 처분을 내린 지 한달여 만에 현종이 흥서함으로써 현종대에는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는 못했으나, 숙종 즉위 이후 단행된 갑인환국과 경신환국에서 척신이라는 위치를 바탕으로 국왕의 전위대적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왕-붕당 역학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갑인예송을 통해 서인 산당이 정국을 주도하던 양상은 변화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붕당 간의 정권 교체까지 이르지 않는 않았다. 현종은 기해년의 예설에 오류가 있었으며 당시의 복제를 애초에 대공으로 정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처벌은 행하지 않고 책임자인 김수홍 및 해당 예관들에 대한 처벌만을 명했다. 또한 김수홍이 물러난 자리에 남인 許積을 영의정으로 재임명하는 동시에 서인 金壽恒을 좌의정, 鄭知和를 우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서인과 남인 사이의 권력균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⁰³⁾ 더욱이 예설을 뒤집은 처분 이후 한달여 후 현종이 승하하면서, 효종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의 최후 결정은 현종을 이어 즉위한 숙종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정국은 현종의 주도로 인해 서인계 대신들이 공격받고 위축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아직까지 서인의 집권이 와해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다.¹⁰⁴⁾ 그러나 대공복 처분이 뒤집히고 서인의 예설이 기각된 상황은, 역으로 남인의 예설에 명분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곧 차후의 정국변동은 숙종과 김석주가 주도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그 명분을 제공한 것은 현종의 처분이었다는 점에서 갑인예송의 정치적 과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곧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집권세력 교체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이미 갑인예송을 통해 정권교체의 명분이 생산되어 있었던 것이다.

103) 《顯宗實錄》 권28, 현종 15년 戊子

104) 갑인예송 이후의 정국변동에 대해서는 李迎春(1998), 261~273쪽 참조.

이처럼 두 차례 예송을 거치며 예송은 정교한 국왕까지 참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대립으로 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비록 서인 내부의 대립 및 현종의 신중한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서인과 남인의 세력구도가 바뀌는 데에까지 이르지 는 않았으나, 예송과정에 국왕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예설을 개선하기보다는 당론을 결집하여 대응하고, 국왕의 처분 및 결정에 따라 정국의 추이가 변화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四. 誤禮에 대한 문책과 執權朋黨의 교체

현종은 직접 논쟁에 참여하여 인선왕후에 대한 대왕대비의 복제를 기년복으로 변경한지 한 달여 후인 1674년 8월 승하하였으며, 왕세자였던 숙종이 즉위하였다. 현종 말년 복제에 대한 처분으로 서인의 입지가 위축되었으나, 숙종 즉위 초반부터 집권 봉당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등의 주목할 만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다. 현종의 국장에 있어서 摠護使에는 관례대로 당시 좌의정이었던 金壽恒이 임명되어 국장을 주관하였으며 송시열을 院相에 임명할 것이 고려되기도 하였다.¹⁰⁵⁾

그러나 해를 넘긴 1675년(숙종 원년) 송시열이 현종의 誌文製述官으로 내정된 것이 빌미가 되어 갑인예송의 연장선상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처음 國葬都監에서 송시열을 지문제술관으로 결정하는 것¹⁰⁶⁾에서 보이듯, 숙종 즉위 초까지 송시열은 현종의 陪臣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송시열이 병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양하고 得罪만을 하고 있던 상황에도 숙종은 여러 차례 사관을 보내어 誌文을 지을 것을 요청하는 등 표면적으로 송시열의 위치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한 진주 유생 郭世樞의 상소가 올라옴에 따라 논란이 시작되었다. 광세건 상소의 요지는 송시열은 효종이 庶子라는 주장을 唱導한 인물로 효종의 죄인이자 선왕 [顯宗]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현종의 誌文을 짓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¹⁰⁷⁾ 이에 송시열을 옹호하는 서인 관료들 및

105) 《肅宗實錄》 권1, 숙종 즉위년 8월 壬子

106) 《承政院日記》 탈초본 12책, 숙종 즉위년 8월 庚申

107) 《肅宗實錄》 권1, 숙종 즉위년 9월 丙戌 “祖述己亥之庶子碁服，而庶子之說，實倡於時烈...然則時烈者，孝廟之罪人也，先王之罪人也。舉王法而不撓，是殿下責也。豈可使兩朝罪人，濫握彤管，以溷先王之盛德乎。”

館學 유생을 중심으로 관세건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여론이 일었으나 숙종은 관세건에게 儒罰만을 내릴 뿐 遠竄에 대한 요청을 끝내 거부하였다.¹⁰⁸⁾ 오히려 숙종은 지문 제술을 송시열 대신 김석주에게 맡겼으며¹⁰⁹⁾, 현종의 行狀 제술을 맡은 송시열의 제자 李端夏로 하여금 行狀에 송시열이 禮를 잘못 인용하였다는 구절을 집어넣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¹¹⁰⁾ 갑인예송 당시 서인의 예설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¹¹¹⁾

이러한 숙종의 태도는 앞서 김수홍에게 中道付處의 처벌을 내렸던 현종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현종은 효종이 長子가 된다는 점을 확정하고 갑인예송 때 이를 직언하지 않은 영의정과 禮官들을 힐난하였으나, 구체적인 중죄를 부여하거나 이를 기해예송 당시의 국제에 따른 기년복 결정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김수홍을 伸救하던 승정원의 청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변에서 잘 드러난다.

기해년에 갑과 을이 다투어 변론할 때, 조정에서 이미 國典을 사용하였으며, 또 국전에 장자와 중자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해년에 甲과 乙이 변론한 것들[庶子와 ‘체이부정’에 관한 여러 논점들 - 필자]을 주워 모아 오늘날의 복제를 낮추려고 꾀하였다. 어떻게 기해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과 비

108) 《練藜室記述》 권32, 「肅宗祖故事本末」 ‘甲寅乙卯時事’

109) 《肅宗實錄》 권1 숙종 즉위년 10월 丙申. 주목할 점은 당시 김석주의 관직은 右承旨에 불과했는데, 지문제술관은 정승이거나 판서, 혹은 文衡 역임자들이 맡았던 관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김석주가 지문제술을 맡은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다.

110) 《肅宗實錄》 권1, 숙종 즉위년 11월 庚申, 己丑

111) 다만 현존하는 「顯宗大王行狀」은 尹鑄가 개찬한 것으로, 《肅宗實錄》 관련 기사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윤희가 ‘行狀中, 議禮一款, 比前加詳, 尤爲明白’라고 한 것에서 보이듯, 숙종이 결국 李端夏가 纂修한 行狀에 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尹鑄로 하여금 改撰을 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 탈초본12책, 숙종 2년 3월 丙戌

교해서 같다고 여기고서, 그대들이 오늘날의 규식을 삼으려고 한단 말인가.112)

현종은 기해예송 당시 ‘체이부정’ 등에 대한 논란들은 모두 개별적인 학자들의 논의에 불과하지 조정에서 이를 채택하여 복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후, 김수흥 등의 죄는 갑인예송에 국한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113) 그 결과 처벌의 범위는 당시 빈청 회의에 참석했던 대신들 및 예관에 한정되었고 송시열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다.114)

이와는 달리 숙종은 갑인예송 때에는 별다른 예설을 개진하지 않은 송시열에게 誤引禮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비단 갑인예송 때의 예설뿐이 아닌, 기해예송 당시까지를 포괄하여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의 예설 전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숙종의 입장은 현종의 誌文과 行狀에 대한 이단하와의 대화 및 이후의 下敎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先王의 뜻은 判府事[송시열-필자]가 禮經을 그릇되게 논했다고 여기신 것인데, 어찌 이에 의하여 고치지 않는가. (중략)

長子를 위하여 응당 3년복을 입어야 할 것인데 기년복으로 내렸기 때문에 선왕께서 그 잘못을 아시고 고치신 것이다. 선왕께서 바로잡으신 盛節을 도리어 가리려고 하는가. (중략)

송시열이 나라의 典禮를 그릇되게 논했기 때문에 선왕께서 특별히 바

112)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7월 戊寅 “己亥甲乙爭辨之時, 朝家已用國典, 亦無長衆之別, 故勿施而已. 今則掇拾己亥甲乙之辨, 欲爲今日服制降殺之計. 豈可與己亥之勿施, 比而同之, 爾等引以爲, 今日式乎.”

113) 현종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曩時大臣收議, 一無體而不正之語, 庚子年爭辨之言, 乃朝家不用之一場空言. 今日賓廳之啓, 敢發此言. 今若曰, 非大臣倡言之罪云, 則厥罪誰尸.”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7월 辛巳

114) 실제로 당시 복제가 결정된 이후 송시열에 대한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의 송시열에 대한 기록은 모두 복제와는 무관한 내용들이다.

로잡으시고, 그 뒤에 首相이 송시열의 뜻에 따랐다는 이유로 죄를 주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고쳐서 말을 만들어 들이도록 하라. (중략) ‘이 일은 기해년의 禮制를 잘못 정했던 것에 근원이 있다’고 한 연 후에야 명백하고 통쾌해질 것인데, 지금 고쳐서 올린 문자에는 다만 ‘송시열의 인용’이라고만 말하였으니, 고쳐 넣도록 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所引’의 ‘所’자를 ‘誤’자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¹¹⁵⁾

이처럼 송시열을 정면으로 지목하여 그의 예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기해예송 당시의 예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은 서인의 誤禮의 범위를 기해예송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었다. 숙종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범위를 갑인예송으로 한정시키고자 했던 현종의 의도와는 판연히 다른 것이었으며, 기해예송 당시 3년복을 주장하였던 남인들이 서인을 향해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숙종의 입장을 기화로 하여 송시열에 대한 남인들의 탄핵이 일어났다. 숙종 역시 이에 호응하여 즉위 초반 송시열을 우대하던 태도를 바꾸어 1675년(숙종 원년) 1월 12일 송시열의 유배를 결정하였으며, 이튿날인 13일 德源府로 귀양보냈다.¹¹⁶⁾ 뒤이어 남인 인사들이 차례로 요직에 임명되었으며, 1675년 6~7월에는 三議政과 이조판서에 차례로 許積, 權大運, 許穆, 尹鏞가 임명되는 등 남인이 인사권을 쥐고 정국을 장악하게 되었고,¹¹⁷⁾ 인조반정 이후로

115) 《肅宗實錄》 권2, 숙종 즉위년 11월 己丑 “先王之意, 以判府事爲誤論禮經, 何不以此改之.....爲長子應服三年, 而降以暮年, 故先王知其非而改之. 先王釐正之盛節, 反欲掩之耶.....宋時烈誤論典禮, 故先王特加釐正, 後以首相從時烈之意罪之. 以此意改措語以入.....此事自己亥誤定禮制爲張本, 然後可以明白痛快, 而今此改進文字, 只以時烈所引爲言, 烏在其改入之意也. 所引之所字, 改以誤字可也.”

116) 《肅宗實錄》 권2, 숙종 원년 1월 辛未, 壬申

117) 당시 남인으로서의 정권교체 양상은 李迎春, 1991 「服制禮訟과 政局變動」 《國史館論叢》 22, 251~257쪽 참조.

최초로 남인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심대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처분은 현종 때의 두 차례 예송과는 달리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 명분이 예송 당시 서인의 誤禮였다는 점에서 예송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계에서 소외되어 있던 남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닌, 숙종과 김석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붕당 간의 대립과는 다른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 이같은 점은 기왕의 연구에서도 반영되어, 당시의 정국변동을 주도했던 정치세력으로 숙종 본인, 종친, 외척 등 다양한 세력을 설정하고 그들의 활동과 역할이 다양하게 설명되었다.¹¹⁸⁾ 그런데 집권 붕당의 교체를 주도한 중추가 누구였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였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정국변동을 불러온 가장 중요한 명분이 예론이었다는 점이었다. 예론을 명분으로 정국을 장악하는 정치세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이 가시화되자 다양한 정치세력들은 국왕과의 제휴와 연합을 통해 대립하는 세력을 실각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치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서인을 실각시키고 남인을 집권시킴으로써 숙종은 집권 서인을 견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¹¹⁹⁾ 남인의 집권이 서인을 견제하기 위한 숙종의 의도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도신징과 곽세건에게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숙종은 갑인예송 당시 상소를 올리고 儒罰에 처해졌던 곽세건을 初仕로서는 이례적으로 司饗奉事에 제수하였으며, 송시열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던 도신징 역시 같은 해 9월 宗簿寺 主簿에 제수

118) 洪順敏, 앞의 논문 168~180; 李熙煥, 1986, 〈庚申換局과 金錫胄〉 《全北史學》 10, 37~44쪽; 이상식, 2005 〈숙종 초기의 王權안정책과 경신환국〉 《朝鮮時代史學報》 33, 116~128쪽 참조.

119) 《肅宗實錄》 권2, 숙종 원년 1월 丁丑, 같은 책 2월 癸卯; 《承政院日記》 탈초본 13책, 숙종 원년 9월 庚戌

하는 등 상소를 올린 유생들에게 實職을 제수하는 과격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들은 서인의 誤禮를 지적함으로써 붕당교체의 길을 열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 명분으로 국왕이 집권 붕당까지 교체한 것은 사림의 본격적인 등장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조선후기 정치 운영 양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비록 선조대에 국왕이 抑強扶弱의 방식으로 붕당간 역학관계를 수 차례 조정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당시는 인조대 이후에 비하면 붕당간의 정치적 우열이 예론과 같은 뚜렷한 명분을 매개로 좌우되던 시기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反正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50여년간 지속적으로 정치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도를 숙종이 전복시켰던 것이다. 숙종은 자신의 조부인 효종의 위상을 빌미로 서인을 정계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는 국왕의 종통과 왕통을 둘러싼 논쟁이 국왕-붕당간 역학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숙종의 처분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먼저 광세건과 도신징과 같은 유생들에게 實職을 제수하여 서용하였다는 사실은 효종의 위상을 인조의 長子임을 확정짓고 왕실의 정통성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인예송 당시 서인의 예설을 비판했던 인물들을 서용한 것은 정권교체의 명분이 古禮를 잘못 인용하여 효종의 위상을 庶子로 설정한 서인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권 붕당의 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숙종은 송시열을 伸救하는 상소에 대해 일관되게 誤禮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으며, 서인을 정계에서 축출함으로써 정국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국왕 주도하에 집권 붕당을 교체함으로써 각 붕당이 국왕과의 역학관계를 더욱 의식하도록 하는 한편, 국왕이 국정 전반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른 하나는 戚臣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金錫胄를 정권교체 과정에서 중용함으로써 붕당간 대립 뿐 아니라 서인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되었고, 김석주가 숙종의 국정 운영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6세기 척신과 연계된 여러 차례의 士禍를 겪은 사람들은 宣祖 즉위 이후 끊임없이 척신세력을 견제하였으며, 沈義謙과 金孝元의 대립에서 보이듯 그 자신이 척신이거나 척신과 연관되었던 인물은 사람의 배척 대상이 되어왔다. 앞서 살펴보았듯 김석주를 위시한 청풍김씨 역시 이러한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인예송 이후 김석주가 정국의 핵심적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하며 국왕의 후광을 등에 업은 척신이 정계의 전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¹²⁰⁾ 김석주는 자신의 권력적 기반의 하나였던 척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정국을 장악하려 하였으며, 이는 효종의 위상을 長子로 확정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숙종의 의지와 부합될 수 있었다. 김석주 역시 척신으로서의 권력 기반이었던 王權 강화는 곧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는 길이였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그 결과 김석주는 갑인예송 당시 승지로서 현종의 예설 개진을 지원하고, 숙종 즉위 초반 요직을 역임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숙종을 지원하며 국왕-붕당간 역학관계를 국왕 측으로 경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척신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서인과 남인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상호간의 제휴와 견제, 국왕과의 역학관계를 조정해 나가며 정권을 장악해야 하는 현실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숙종이 의도했던 결과만을 낳았던 것은 아니

120) 甲寅禮訟과 숙종 즉위 이후 척신세력 및 종친들이 정치력을 장악해 나가는 양상에 대해서는 李迎春(1998), 洪順敏(1986), 이상식, 앞의 논문, 113~145쪽 참조.

다. 먼저 김석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김석주는 서인의 당색을 띠고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인의 실각을 주도함으로써 붕당 간의 역학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기존의 붕당은 학파를 모체로 형성되어 범연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내부에도 주도층과 비주류로 나뉘어 상이한 정치적 노선을 드러내고 있었다.¹²¹⁾ 그리고 서인의 정국 주도가 이어지던 동안에는 서인의 집권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남인을 포용하는 정치구도가 지속되고 있었다.¹²²⁾ 그러나 예론을 명분으로 국왕이 정권을 대거 교체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각 정파는 본격적으로 국왕과의 관계를 통해 집권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가 붕당의 결속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결과 붕당은 더욱 정치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결집되는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즉위 초기 숙종의 정국운영 방식은 전통적 의미의 破朋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서인의 주도 하에 남인에게도 일정량의 정치적 지분을 부여하던 전대의 정치구조와도 다른 것이었다. 전통적인 붕당론에서는 신료들이 독자적인 붕당을 이루는 것을 부정하고 있었으며, 붕당이 일정 부분 긍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군자만으로 이루어진 一朋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었을 뿐 복수의 붕당이 경쟁하며 정치의 주체로 부각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복수의 붕당이 병존하며 각기의 당론을 내세우며 결집하는 것은 정국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중앙집권을 표방하던 국왕의 입장에서는 지양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국왕은 전통적으로 調停策이나 調劑策¹²³⁾을 통해 붕당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

121) 洪順敏, 위의 논문, 131~135쪽.

122) 李泰鎭(2003), 56~59쪽.

123) 調停, 是非明辨, 調劑를 통한 破朋黨論은 鄭萬祚, 앞의 논문(1993), 128~141쪽 참조. 단 鄭萬祚는 朋黨論의 차원에서 調停論, 君子小人 · 是非明辨論, 調劑論을 구분하였으나, 국왕이 破朋黨을 이루기 위해 채택

엇보다도 당색을 초월한 인재의 수용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서만이 破朋黨이 가능하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국왕의 주도하에 정국을 주도하던 봉당을 일거에 교체하는 것은 당색을 가리지 않고 고루 인재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調停策이나 調劑策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특정 봉당 일방의 집권을 용인한다는 측면에서 방법상 오히려 서인들이 주장하던 是非明辨 이후의 破朋黨과 유사하였다.¹²⁴⁾ 하지만 是非明辨 이후의 破朋黨은 군자·소인의 철저한 분별을 통해 君子黨만을 존속시킴으로써 一朋만이 존재하는 정국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破朋黨을 이룬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음에 반해, 일방으로의 정권교체는 실각한 봉당이 尙存하는 가운데 집권 봉당만이 정치 운영의 주체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곧 방법상 특정 봉당만이 중심이 되어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 실상은 현격히 다른 것이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변화는 집권 봉당의 존재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명분의 차원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破朋黨의 논리가 현실적 힘을 잃고, 복수의 봉당이 각축하는 현실을 승인하였다는 중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집권 봉당 교체의 명분이 국왕, 혹은 왕실의 위상을 둘러싼 문제

할 수 있는 方策이라는 차원에서 調停策, 是非明辨 이후의 破朋黨, 調劑策으로 구분하였다.

124) 이에 대해 金駿錫은 서인의 領袖인 송시열의 是非明辨論을 사실상 ‘당파의 불가피성을 합리화’하는 봉당긍정론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의 입장은 군자로 자처하는 서인의 합리화와 소인으로 지목된 남인의 축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복수의 봉당이 공존하는 봉당 정치 자체를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사실상 정파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당을 합리화하고 있는 논리는 봉당의 존재 자체는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복수 봉당이 각축하는 현실까지를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金駿錫, 2003 「宋時烈의 世道政治論과 賦稅制度釐正策」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研究》, 지식산업사, 283~292쪽.

에 있어 국왕의 의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였다는 것은 국왕에게도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집권 서인을 견제하고 실각시킬 수 있었던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나, 그 이면에서 남인의 예설을 승인함으로써 논쟁에서 승리한 남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 예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쇄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암묵적으로 남인과 제휴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봉당간의 대립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각 봉당의 결집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왕이 집권 봉당을 자신의 의지로 교체하고 능동적으로 정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王權이 신장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나, 국왕 자신이 승인한 예설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집권당을 조정할 수단이 제한된 것 역시 사실이었다. 그리고 선왕의 위상을 명분으로 정국변동을 초래한 결과, 왕실의 정통성 문제가 점차 조야의 是非의 대상이 되어갔다는 사실도 잠재적 불안요소였다. 현종과 숙종이 국왕의 위상과 관련된 예론을 언급하는 상소를 올린다면 重刑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야를 막론하고 예론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효종의 위상이 사림 전반의 是非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⁵⁾

이처럼 숙종은 선왕의 위상을 명분으로 남인과 암묵적인 제휴를 통해 집권 봉당을 교체함으로써, 국왕이 봉당과의 역학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권교체는 봉당 간의 정치적 대결에 의해 권력관계가 변동한 것이 아닌, 국왕의 처분에 의해 집권 봉당과 실각 봉당의 위치를 뒤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전대와는 다른 정치형태를 보이는 것이었다. 또한 집권 봉당과 실각 봉당의 구도가 선명해짐으로써 봉당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더욱

125) 《肅宗實錄》 권8, 숙종 5년 3월 丙辰; 권9, 숙종 6년 6월 戊辰

결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 정치집단은 보다 더 정치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결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국왕에게 傾倒된 것으로 보이는 국왕-붕당간 역학관계 속에서도 붕당의 해소와 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남인의 집권은 숙종 자신이 승인한 것과 다름없었고, 그 명분은 예송에서의 승리에 있었기에 이들의 해소를 포함한 破朋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국왕의 정국 주도를 위해 집권 붕당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숙종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상적 명분으로서의 예설과 예송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밖에 없었다.

五. 換局과 國王-朋黨 力學關係 변화

갑인예송과 연이은 숙종의 처분을 통해 서인이 정계에서 배제되고 金佑明, 金錫胄를 중심으로 한 戚臣들과 許積, 許穆, 尹鑄 등으로 대표되는 남인들이 정국 운영의 주체로 떠올랐다. 이들은 한동안 정계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아울러 이미 실각한 서인을 정계에서 배제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권력의 물리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병권을 장악하기 위한 각축이 일어났다.¹²⁶⁾ 예송과 이후의 정권교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국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석주와 숙종의 國舅 金萬基를 중심으로 척신들이 병권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남인 역시 윤희와 허적을 중심으로 都體察使府를 復設하여 병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한정된 병권을 두고 척신들과 남인들이 병권 확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 시기 정치 집단들이 예론적 명분 뿐 아니라 권력의 물리적 실체를 확보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실질적 권력 장악이 붕당을 비롯한 정치주체 간의 주요한 대립이었음을 선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실각한 서인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세였다. 이는 권력의 물리적 실체인 병권을 두고 벌어진 정치적 각축과는 달리, 여전히 선대로부터 이어진 예론을 둘러싼 명분적 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송시열의 告廟를 둘러싼 일련

126) 숙종 초반 남인집권기 兵權의 향방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李泰鎮, 1976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43~148쪽; 洪順敏, 앞의 논문, 168~180쪽 참조.

의 논란이었다.

송시열이 유배된 후 1675년(숙종 원년) 幼學 趙瑊이 복제를 釐正한 연유를 종묘에 告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다. 영의정 허적은 告廟는 大逆을 바로잡은 이후에나 올리는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고 숙종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¹²⁷⁾ 이에 송시열을 극형에 처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연이었으나 숙종은 이를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이후 1677년(숙종 3)에 다시 告廟를 청하는 여론이 일어났을 때에도 허적과 김석주는 告廟를 한다면 송시열을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告廟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대해 허목은 강경한 태도로 金安老의 예를 들어 告廟를 주장하였으나, 숙종은 告廟를 불허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¹²⁸⁾

그러나 1679년(숙종 5) 5월 강화도 凶書 사건과 宋尙敏의 상소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남인들은 다시금 告廟를 주장하였으며, 결국 凶書의 주모자로 지목된 李有湏을 伏誅한 후 告廟가 단행되었다.¹²⁹⁾ 숙종은 告廟 단행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凶書 속에 宗統과 嫡統의 분리 문제가 다시금 거론된 상황에서 告廟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효종의 위상이 다시 흔들릴 우려가 있었기에 告廟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告廟의 명분은 凶書로 분란을 야기한 이유정 등에 대한 討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송시열에 대한 按律 처벌이 동시에 제기되는 등 告廟의 실질적인 목표는 송시열이었으며, 이는 곧 告廟가 여전히 서인에 대한 남인의 명분적 공세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³⁰⁾

127) 《肅宗實錄》 권3, 숙종 원년 3월 丁卯

128) 《肅宗實錄》 권6, 숙종 3년 6월 壬戌

129) 《肅宗實錄》 권8, 숙종 5년 4월 辛卯, 啓辭; 같은 책 5월 戊申. ‘江都凶書’ 사건에 관하여서는 李熙煥, 1986, 〈庚申換局과 金錫胄〉 《全北史學》 10, 39~40쪽 참조.

告廟를 통해 서인을 겨냥한 남인의 공세는 기존 예송 과정에서 양자가 서로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예송 초기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상호간의 대립은 예설의 正誤를 두고 벌어진 상소 공방에 불과한 것으로, 비교적 학문적 논쟁의 성격이 짙었다. 갑인예송을 거치며 남인이 집권하였을 때에도, 대립의 각은 국왕과 집권 서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봉당 간의 정치적 공방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禮論의 잘못에 관해 告廟를 청하는 남인의 주장은 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 공세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례로 보았을 때, 慶事나 喪事가 아님에도 告廟를 한 경우는 대부분 역모를 진압하고 역도를 숙청한 뒤의 일이었기 때문에, 송시열 등 서인의 誤禮로 인해 종묘에 告한다는 것은 그들을 역적에 비견하는 것이었다.¹³¹⁾ 물론 허목은 告廟를 하는 것은 先祖에 대한 예를 지키는 차원의 일일 뿐 討逆이나 加律과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송시열의 賜死까지 요청하지는 않았다.¹³²⁾ 그러나 허목은 송시열의 죄가 ‘효종을 등극하지 않았어

130) 《肅宗實錄》 권8, 숙종 5년 5월 乙卯; 같은 책 5월 戊午; 같은 책 8월 丙寅. 위의 전거들은 각각 玉堂, 許積 등 남인의 중진들의 송시열의 按律에 대한 請, 경상도 유생의 상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대신, 간관, 재야의 남인들이 모두 송시열의 治罪를 요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1) 逆賊을 討伐한 후 告廟한 사례는 《朝鮮王朝實錄》에서도 여러 건 발견된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기록은 燕山君代 戊午士禍 이후 告廟한 일로, 비록 연산군 당시의 일이기는 하나 告廟가 정치적 보복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燕山君日記》 권30, 연산군 4년 7월 辛酉 참조.

132) 《記言》 권66 「自序」 “時有告廟之議，爲首相所沮．今其首罪者既免死，放諸四裔，告廟不加嚴，不告廟不加寬．禮曰，事死如事生，事亡如事存，孝之至也．宗廟之禮，聖王追孝之大節，國有事則告，雖常事，無不告…(中略)天子諸侯所尊，莫大於宗廟，敬之斯承之矣，愛之斯盡之矣．今上能繼志述事，典禮既正，人心大定．國之大事，且莫大於此，而終無因事之祭，有事必告之義安在．此有國之羞，非恭承宗廟意也，事竟不行．”

야 하는 임금으로 여기고 先王을 헐뜯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로 명시하였다.¹³³⁾ 나아가 죄상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나 너그러운 왕법의 적용으로 인해 극형에 처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 송시열의 誤禮를 죄악으로 확정함으로써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켰다.¹³⁴⁾

이처럼 상대의 죄악을 명백히 하고 誅殺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봉당 간의 공방이 이 때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미 선조대의 己丑獄死의 예에서 보이듯 때로는 대규모 숙청을 동원한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축옥사는 예론과 같이 사림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는 명분을 앞세워 일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봉당으로 처벌된 인물들 역시 명확한 당색으로 구분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친교에 의해 연좌된 것이었다. 그러나 告廟를 명분으로 한 남인의 공세는 예론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명분을 앞세워 국왕마저 압박할 수 있었으며, 예송 과정에서 점차 당론이 개인의 견해를 앞서고 있던 상황과 맞물려 송시열의 예론에 찬동했던 서인이라면 예외 없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허목을 필두로 한 告廟에 대한 강경한 주장은, 비록 갑인예송 과정에서 예론의 처분을 뒤집는데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오랜 시간 서인 漢黨의 당색을 지니고 있었던 김석주 등 척신들에게는 정치적 위험부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誤禮를 이유로 告廟한 이상 예송 당시 효종의 위상을 衆子 혹은 庶子로 보았던 인물들은 명분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반대로 효종의 위상을 長子로 보았던 淸南 중심 남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133) 《承政院日記》 탈초본 14책, 숙종 5년 5월 丙午 “禮, 天子諸侯有尊宗之貴, 時烈言嫡子庶子, 以孝廟爲不當立之君, 貶損至尊, 詆訾先王, 罪當死者一也.”

134) 《承政院日記》 탈초본 14책, 숙종 5년 5월 丙午, 丁未

척신 외에도 許穆 등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정치적 입장을 보였던 許積의 경우 기해예송 당시 뚜렷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國制에 따르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으며 척신 중 하나였던 金萬基 역시 기해예송과 갑인예송 당시 각각 대간과 판서로서 서인의 禮論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告廟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¹³⁵⁾ 실제로 허목은 허적에게도 그의 행태가 기회주의적이며 척신과 결탁하고 서자 許堅의 방종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가했다. 이처럼 남인 내부에서도 예송 당시 3년설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들이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 공세를 취할 수 있었을 정도로 예론의 정치적 파장은 이 숙종 초년까지 남아있었던 것이다.¹³⁶⁾

숙종의 입장에서도 告廟로 인해 송시열의 죄상이 더욱 뚜렷해짐으로써 서인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남인의 집권 명분이 강화되는 것은 남인을 견제할 수단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숙종은 송시열의 告廟를 승낙하고 ‘誤禮亂統’의 죄는 인정하면서도 송시열을 賜死하는 것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예론을 빌미로 상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¹³⁷⁾

이처럼 예론의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는 표면상 현종과 숙종이 동일해보였으나, 그 배경과 의도는 동일하지만은 않았다. 현종대의 조치는 아직 봉당간의 직접적인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송이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비화하는 것을 막

135) 《顯宗實錄》 권2, 현종 원년 4월 丁未;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1월 辛丑.

136) 《肅宗實錄》 권8, 숙종 5년 6월 丙子 “判府事許穆筭曰, 領議政許積, 先王所顧托, 上所親信, 如齊桓之於管仲. 任大責重, 威權既盛, 締交戚里, 以爲形勢...(中略) 其庶子堅所爲無狀, 掌邦禁者莫之禁...(중략) 彼入相於時烈時, 與之相善, 論議無一違貳, 及時烈敗, 附合公議, 若初無苟同者. 及告事議起, 乃曰此禮若行, 終有難處事, 沮抑不行. 大義所重, 在宗廟乎? 在時烈乎? 事之難處, 果何事也?”

137) 《承政院日記》 탈초본 14책, 숙종 5년 5월 乙卯

기 위한 목적이 강하였다. 반면 숙종의 경우 남인의 집권과 서인의 실각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예설이 직접적인 당쟁의 도구가 되는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현종과 숙종의 조치는 국왕의 위상이 봉당 간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숙종의 경우 자신의 선택에 의해 남인의 예설이 명분을 얻은 상황에서 이들의 명분을 다시금 억눌러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예론을 명분으로 서인에 대한 남인의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권세력 내부에서 다시금 분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허목·윤휴를 비롯한 청남과 허적, 권대운을 중심으로 한 탁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이다.¹³⁸⁾ 이들의 갈등은 숙종 원년(1679) 正言 李壽慶이 영의정 허적과 좌의정 권대운을 공격한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이에 洪宇遠과 대사헌 李袞 등이 이를 반박하자 우의정 허목과 이조판서 윤휴가 이들을 변호하면서 갈등이 점차 깊어졌으며, 이후 李沃과 柳命天 간의 갈등이 남인 전체로 확산되며 청남과 탁남 간의 알력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¹³⁹⁾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은 청남과 탁남 사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윤휴와 허적 역시 都體察使府 설치와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석주와 윤휴도 대립하고 있었다.¹⁴⁰⁾

윤휴와 허적의 대립 중 주목할 사안은 영의정으로 暮年服 결정에 관여하였던 鄭太和의 贈諡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허적은 정태화가 기년복을 채택했던 것은 國制에 따랐던 것일 뿐이며, 四種說에 의해 기년복을 주장하였던 송시열의 예론과는 다른 것이라며 정태화의

138) 淸南과 濁南 사이의 갈등과 분열은 李熙煥(1986), 40~44쪽 참조.

139) 《練藜室記述》 권33, 「肅宗朝故事本末」 ‘淸南濁南之分黨’, ‘李沃 柳命天之相關’

140) 兵權을 둘러싼 허적, 윤휴, 김석주 사이의 갈등은 이상식, 2005 <숙종 초기의 王權안정책과 경신환국> 《朝鮮時代史學報》 33, 129~132쪽; 洪順敏, 앞의 논문, 168~180쪽 참조.

贈諡를 요청하였다.¹⁴¹⁾ 반면 윤희는 당시 기년복이 채택된 것은 國制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경국대전》의 國制는 士庶人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왕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정태화가 기년복을 채택한 것은 국가에 전례도 없던 일을 단지 송시열의 주장을 따르기만 했던 것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¹⁴²⁾ 정태화를 두고 벌어진 윤희와 허적의 대립은 표면상 정태화의 贈諡에 관한 견해차이로 보였으나, 허적이 기해예송 당시 비국 당상 회의에서 國制를 따를 것을 주장했던 사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사실상 허적에 대한 윤희의 공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남인 내부의 갈등은 병권과 같은 권력의 물리적 실체를 두고 벌어진 측면 외에도, 현종대 예송에서부터 이어지는 예론적 명분을 둘러싼 갈등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기해예송 당시 효종이 長子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허목과 윤희는 그렇지 않았던 허적에 비해 더 많은 예론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허적은 대신으로서 실질적 권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론에서의 명분에서 밀려 청남의 공세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告廟를 둘러싼 일단의 논란, 예론을 명분으로 한 청남의 공세는 권력획득을 위한 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병권 장악과 같은 물리적 권력 획득과는 달리, 여전히 예론의 명분이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은 예송의 정치적 과장이 1670년대 후반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관직이나 병권 획득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청남이 명분을 무기로 서인과 탁남과의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예송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척신, 청남, 탁남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자 숙종은 붕당의

141) 《肅宗實錄》 권9, 숙종 6년 3월 辛卯

142) 《承政院日記》 탈초본 14책, 숙종 6년 3월 辛卯

폐해를 강하게 경계하고 봉당 간 화합을 요청하는 등 정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¹⁴³⁾ 특히 숙종은 청남과 탁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1679년(숙종 5) 중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봉당의 폐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숙종의 우려는 다음 인용문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上이 傳敎하였다. 지금처럼 국가가 위태한 때일수록 대소 臣僚들이 사사로움을 버리고 公道를 좇아 서로 공경하고 협력하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인데, 요즘 들어 조정에는 조금도 和協하는 기풍이 없다. 한쪽 편을 극도로 미워하여 지난날 朋比의 피해를 입었는데, 또 한쪽 편이 둘로 갈라져 오직 자기 黨을 庇護하는 것만 능사로 여기고 國事를 치지도외하여 끝내 정승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편안히 여기지 못하고 서둘러 國都를 떠나게 되었으니, 실로 통탄스럽다. 만약 준엄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 지난 습관대로 서로 대립하여 이기기에만 힘쓰고 사사로이 黨을 두둔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重律로 다스려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¹⁴⁴⁾

143) 《肅宗實錄》 권8, 숙종 5년 10월 癸亥. 한편 鄭景姬는 당시 숙종은 남인 내에서의 화협만을 논하였을 뿐 蕩平論의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이 시기에 蕩平論이 아직 제창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나 이때의 화합, 곧 ‘同寅協共’이 남인 간의 화협만을 추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동일한 傳敎 내에 遠竄에서 放免하기를 命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南九萬, 閔鼎重, 閔維重, 李翊, 李翹, 李選 등 西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放免의 命을 還收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허하였다. 또한 이 傳敎가 있던 이듬해에 庚申換局이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숙종의 입장에서는 朋黨 간의 대립으로 정국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을 뿐 黨色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蕩平論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여 숙종이 남인 간의 保合만을 추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鄭景姬, 앞의 논문, 132쪽 참조.

144) 《肅宗實錄》 권8, 숙종 5년 6월 丁丑 “敎曰, 當此國家陸危之日, 大小臣僚, 祛私循公, 同寅協恭, 乃臣子之道也. 近日朝著, 少無和協之風. 一邊痛惡前日朋比之爲害, 而一邊分而二之, 惟以護黨爲能事, 置國事於度外, 終使相臣不安其位, 顛倒去國, 予實痛惋也. 若不嚴加痛懲, 則將至國不爲國. 自今以後, 如有復踵前習, 角立務勝, 循私護黨者, 當繩以重律, 斷不饒

집권 붕당 내부의 분열은 정권교체의 정치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었다. 소수의 서인을 제외하고 남인들을 정계에 배치시킴으로써 朋比를 소멸하여 붕당 간의 대립이 원활한 정국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국왕의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대립이 반복되는 상황은 숙종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일이었다.

집권세력이 단일하게 결집되지 않았던 상황은 이전 시기에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예송 과정에서 서인 역시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집권세력이 단일한 이익과 목적을 통해 결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예송과 그에 따른 집권 붕당의 교체로 붕당 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당과의 공존을 넘어서는 상황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黨比를 없앴으로서 집권 붕당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국왕이 국정을 원활히 주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는 일이었다.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남인에 대한 견제는 숙종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破朋黨의 방식, 곧 당색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인재 수용을 통한 調停은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남인은 탄남과 청남으로 분열되어 갈등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서인 역시 강화도 凶書 사건과 告廟로 인해 禮論상의 명분을 상실하고 실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평무사한 인재 수용이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남인이 정권을 장악한 이상, 정계에서 이들을 견제할 수

貸.”

있는 유력한 정치주체는 국왕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김석주와 같은 척신들은 예송과 이후의 정권교체를 주도함으로써 권력의 일정 지분을 점유할 수 있었으나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出處였던 서인을 정계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그 정치력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척신을 견제하는 풍조가 여전한 가운데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결국 남인의 명분을 뒤집을 수 없는 한, 더 이상 예론을 빌미로 정권을 교체할 수는 없었다.

결국 정권의 교체는 예론과 같은 명분이 아닌, 告變을 통한 換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許堅의 역모에 대한 告變이 일어나자 숙종은 討逆을 명분으로 경신환국을 단행하고, 실각해 있던 서인을 다시금 등용함으로써 집권 봉당을 교체시켰던 것이다.¹⁴⁵⁾

비록 경신환국의 진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으며 허적과 윤휴의 賜死가 모역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모역의 당사자들과 연루되었던 사실만으로도 숙종은 이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모역은 국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으로, 모역이 밝혀진다면 국왕의 입장에서는 이에 가담한 인물 혹은 집단을 대규모로 討罪할 수 있었다. 결국 숙종은 고변을 모역으로 확정짓고 남인을 축출하는 庚申換局을 단행하였다.

숙종은 경신환국을 통해 남인을 축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정국의 유력한 주재자였던 허적을 제거함으로써 한층 강력한 王權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권봉당을 축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왕이 온전히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할 수는 없었다. 남인을 축출하고 난 후의 정치적 공백을 숙종 자신이 정계에서 배제한 서인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鄭元老와 姜萬鐵의 告變으로 謀逆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서인인 金壽恒과 鄭知和를 영의정과 좌의정에 임명하였다는

145) 경신환국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李熙煥(1986) 및 이상신, 앞의 논문 참조.

사실은 역모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환국을 위해서는 숙종 자신이 배제했던 서인을 재기용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⁴⁶⁾ 비록 남인 축출 과정에는 金佑明과 金錫胄와 같은 척신들을 동원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척신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었기에, 부득이 서인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誤禮를 이유로 竄黜되었던 송시열을 다시 서용하는 것은 숙종에게도 심각한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송시열을 방면하고 서용하는 것은 기존에 그에게 부과되었던 誤禮의 잘못을 사면한다는 의미로 비출 수 있었으며, 그럴 경우 다시금 효종의 위상 및 기해예송 당시의 복제 건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¹⁴⁷⁾ 실제로 복권된 송시열은 또한 許堅 등의 역모 이후 告廟를 논하던 臺臣들 중 1679년(숙종 5) 당시 송시열의 誤禮를 비판하던 인물들이 많다고 하여 都城을 나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으며, 숙종은 이에 대해 모호한 비답을 내리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송시열이 방면될 당시 우의정 閔鼎重은 송시열의 ‘貶降君父, 壞亂宗統’의 죄목은 억울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¹⁴⁸⁾ 이후 경연 석상에서도 송시열 및 송시열을 비호하다 杖死된 宋尙敏은 誣告를 입은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서인들은 기해예송 당시 송시열은 國制에 의한 기년복을 주장하였을 뿐이며, 갑인예송 때의 대공복 付標는 禮官의 실수일 뿐 송시열과 무관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송시열의 誤禮에 대한 처벌을 무마시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었으며, 숙종 역시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¹⁴⁹⁾

146) 《肅宗實錄》 권9, 숙종 6년 4월 壬戌, 甲子 참조.

147) 《肅宗實錄》 권10, 숙종 6년 10월 戊申

148) 《肅宗實錄》 권9, 숙종 6년 5월 壬子, 8월 庚申

149) 숙종이 송시열의 위리안치를 풀 것을 명하면서, 李惟泰의 상소 속에 송시열이 ‘適統何歸’라고 말했다고 하는 구절을 볼 때 송시열이 개과 천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방면을 허락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이처럼 告廟까지 되었던 송시열을 다시금 서용하는 것은 갑인예송 이후 정권교체의 핵심 명분이었던 기해예송 당시의 誤禮의 명분을 상대적으로 희석시키는 일이었고, 그 결과 재집권한 송시열과 서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강화될 수 있었다. 표면상 환국을 통해 탁남, 청남을 막론하고 집권 남인을 축출함으로써 숙종은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으나, 남인의 실각으로 인한 공백을 서인을 재수용하여 메움으로써 破朋黨이라는 원칙을 실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신환국은 환국을 주도한 숙종 뿐 아니라 집권한 서인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요하는 것이었다. 경신환국 과정에서 전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부족하였으며, 誤禮의 책임이 희석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효종에 대한 죄인이라는 허물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신환국의 주요한 명분이었던 許堅의 謀逆은 예론과 같은 사상적 절대성을 지니는 명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숙종은 경신환국 이후 환국의 주도자인 金錫胄를 위시한 서인들에게 保社功臣을 錄勳하고 남인의 謀逆을 확정지음으로써 서인 집권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¹⁵⁰⁾ 결국 경신환국은 더 이상 예론을 명분으로 삼을 수 없게 된 숙종이 정치적 수단인 모역을 동원해 집권 붕당을 교체한 사건으로, 붕당간의 대립이 더 이상 예론과 같은 사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 현실적인 권력쟁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붕당은 상대당의 실각과 賜死마저 불사하는 투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정권을 장

때 ‘適統何歸’는 비록 효종을 衆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통은 효종에게만 귀속될 뿐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송시열의 주장을 이 유태가 인용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숙종은 기해예송 당시 송시열의 誤禮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肅宗實錄》 권9, 숙종 6년 5월 庚子 참조.

150) 保社功臣의 錄勳 경위는 최근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 유일본인 《保社錄勳都監儀軌》에 잘 정리되어 있다.

악해 나가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대규모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상대와의 공존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방안만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과정이 국왕의 일방적인 주도만으로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면상 金錫胄를 위시한 戚臣을 내세운 국왕이 換局을 주도하였으나, 그것은 재야에 존재하고 있던 서인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換局은 집권봉당의 실각이 전제되었다 점에서 표면적이거나 봉당 간 공존이 유지되었던 전대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反正이나 예송에서의 승리와 같은 명분이 정치적 우위를 가져오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討逆과 賜死가 정치운영의 수단으로 부각되었다는 또 다른 정치지형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換局 이후에도 각 봉당이 단일한 정치적 지향과 정체성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換局에서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 서인이 老論과 少論으로 분기되었던 점에서 보듯, 봉당은 그 내부에 다양한 분열과 조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換局을 통해 전면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제시된 이후 각 집단들은 예론적 명분 외에 換局을 단행할 수 있는 국왕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정권 획득을 위해 국왕과의 제휴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왕은 이처럼 변화된 力學關係를 통해 자신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을 조정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명분상으로 부정되어야 할 복수 봉당간의 대립을 국왕이 사실상 인정한 위에, 이들 간의 조정과 견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정국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국왕 외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의 붕괴가 병백한 현실로 나타났다. 다양한 정치집단이 제휴와 견제를 통해 분화하고 세력화하

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결국 갑인예송으로부터 경신환국을 전후한 사이의 정국은 예송의 병분을 매개로 한 정국 변동이 일단락되고, 換局이 시작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남인은 예송에서의 승리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국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 했으며, 숙종은 예송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 곧 討逆과 賜死가 수반된 換局이라는 새로운 정국운영 방식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예송을 통해 변화한 국왕-붕당, 붕당-붕당 간 정치구조는 換局을 통해 새로운 지형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 붕당과의 대립, 그리고 국왕과의 제휴와 조정을 통해 붕당은 점차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집단으로 변모하여 갔다. 국왕은 이들과의 제휴를 통해 붕당과의 力學關係를 자신이 주도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자신에 의해 집권이 승인된 집권붕당을 만들어내었다. 이후 이들의 조정을 위해 또 다른 붕당간의 교체, 곧 換局을 시도함에 따라 국왕과 각 붕당간의 제휴, 견제관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국왕의 위상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송은 환국기에 이르러 국왕-복수 붕당의 협력과 견제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창출해내었던 것이다.

結論

효종과 인선왕후의 승하 이후 조선시대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복제논쟁, 곧 예송이 일어났다. 효종의 母后였던 장렬왕후가 효종과 인선왕후를 위해 어떠한 服制를 입어야 하는가는 조선후기 발달일로에 있던 예학과 맞물려 국가적 논란이 되었으며, 정계에 진출해 있었던 山林들은 관료이자 예학자로서 복제논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복제논쟁은 단순히 예론적 차원의 대결을 넘어서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비화되었으며, 논쟁 자체가 효종의 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대 국왕도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17세기 중후반 정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예송은 국왕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 禮를 매개로 하여 국왕-붕당, 그리고 붕당-붕당간 역학관계 변화를 불러온 계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송의 핵심이었던 복제 문제는 효종의 위상에 대한 상이한 두 가지 관점으로 대별되었으며, 국왕은 그 중 하나의 예설을 승인함으로써 특정 붕당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론이 분열되고 복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가열될수록 붕당은 점차 상호간의 공존과 균형보다는 자파의 예설을 관철시킴으로써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집단으로서 그 특징을 선명히 해 나갔던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각 인물들의 자율적 의사 개진의 폭은 점차 줄어들고, 당색이 개인적 견해를 점차 압도하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예론을 매개로 각 붕당 간의 권력균형을 조정함으로써 붕당과의 역학관계의 축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으나, 先王을 둘러싼 예론을 정국운영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예론이 환국의 명분이 됨으로써 국왕이 스

스로 집권 봉당을 등장시켰으며, 집권 봉당과 실각 봉당의 대립이 가속화되며 당론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왕과 복수의 봉당이 상호 제휴와 견제를 통해 역학관계의 축을 장악하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정치집단으로서의 봉당의 면모는 더욱 선명해졌으며, 국왕과 집권 봉당은 동반자로서, 그리고 실각한 봉당은 언제든지 또 다른 제휴를 통해 정국변화, 곧 환국을 불러올 수 있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17세기 예송의 정치적 의미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선의 봉당은 애초에 부정적 존재로서 그 등장에서부터 破朋黨이 주장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봉당이 국왕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파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송과 뒤이은 숙종 초의 庚申換局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봉당과 복잡한 협력관계와 견제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봉당 역시 국왕과의 力學關係 조정을 통해 집권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처럼 예송은 禮說과 명분이 중시되던 현종대의 정치지형 속에서 발생하여 경신환국까지 그 정치적 파장을 이어갔고, 끝내는 환국이라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낳은 기폭제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17세기 중반 예송이 지니고 있었던 정치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예송이 가져온 정치사적 파장에 집중하였기에 기해예송에서부터 경신환국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국왕과 봉당의 역학관계 분석에 치중하고 예송 자체의 논리 분석에는 소홀하였던 점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국 이후 등장한 정치지형이 이후 시기 어떠한 면모를 보였는지에 대한 분석에 이르러야 이러한 변화의 의미가 규명될 것이다.

17세기 중후반 정치사에서 예송과 그 결과 나타난 갑인환국, 경신

환국의 의미를 온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회에서 예론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 예송의 내적 논리에 대한 규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송을 불러온 정치지형이 환국을 통해 변화한 이후 숙종대를 거치며 어떠한 정치구조를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국왕과 붕당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예론으로 표상된 국왕의 정통성과 권력의 기반, 이에 대한 국왕과 신료들의 인식의 층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一. 사료

1. 연대기류

- 《孝宗實錄》
- 《顯宗實錄》
- 《顯宗改修實錄》
- 《肅宗實錄》
- 《承政院日記》

2. 문집류

- 《栗谷全書》
- 《記言》
- 《沙溪全書》
- 《宋子大全》
- 《與猶堂全書》
- 《農隱先生遺稿》
- 《西坡集》

3. 법전류 및 기타

- 《經國大典》
- 《國朝五禮儀》
- 《仁宣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 《練藜室記述》
- 《桐巢漫錄》
- 《周禮》
- 《資治通鑑》

《儀禮註疏》
《禮記集說》
《保社錄勳都監儀軌》

二. 연구논저

1. 단행본

- 李泰鎭, 1976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 李泰鎭, 1985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員
- 鄭萬祚, 1993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一潮閣
- 李成茂 外, 1992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이태진, 2003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 李迎春, 1998 《朝鮮 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 薛錫圭, 2002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 鄭萬祚 外, 1999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國學資料院
- 이태진 外, 2003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 近代史研究會 編, 1987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 諸問題 上》, 한울
- 오수창, 2010 《조선시대 정치, 틀과 사람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韓國實學思想研究 1》, 혜안
- 薛錫圭, 2002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 조선시대사학회, 1999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國學資料院
- 金駿錫, 2003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研究》, 지식산업사

2. 논문

- 李迎春, 1991 <服制禮訟과 政局變動 - 第二次禮訟을 中心으로> 《국사관논총》 22
- 洪順敏, 1986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韓國史論》 15
- 鄭景姬, 1993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의 시도> 《韓國史論》 30
- 鄭萬祚, 1999 <17세기 中반 漢黨의 政治활동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 鄭萬祚, 1989 <16世紀 士林系 官僚의 朋黨論> 《韓國學論叢》 12
- 吳洙彰, 1985 <仁祖代 政治勢力的 動向> 《韓國史論》 13
- 禹仁秀, 1990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 《歷史教育論集》 1
- 禹仁秀, 1991 <朝鮮 仁祖代 政局의 動向과 山林의 役割> 《大丘私學》 41
- 李迎春, 1991 <服制禮訟과 政局變動 - 第二次禮訟을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22
- 金龍德, 1986 <‘朋黨政治論’ 批判> 《정신문화연구》 86년 여름호
- 鄭玉子, 1989 <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 《韓國文化》 10
- 李迎春, 1989 <第一次 禮訟과 尹善道の 禮論> 《清溪私學》 6

Abstract

Development of Yesong in the mid to late 17th Century and Change of Political Terrain

YANG, Seonbi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political impact of *Yesong*(禮訟), which occurred in the mid to late 17th century and continued until *Gyeongsinhwanguk*(庚申換局). This thesis examines the change of political terrain which was result of *Yesong*, from the standpoint of political dynamics between king and *Bungdang*(朋黨).

Yesong was the most significant issue in the world of politics and thought. This debate was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 of opinion that whether *Hyojong*(孝宗) is *Jeokjangja*(嫡長子) or *Jungseoja*(中庶子). People disputed controversy at the state of division. *Namin*(南人) asserted the former, and *Seoin*(西人) insisted the latter.

The political impact in *Yesong* happened in 1659 and 1674 lasted to 1680, but an aspect was different by the time. For each situation the king showed different response according to the state of debate.

In the *Gihaeyesong*(己亥禮訟), *Hyojong's* positions on the *Jongtong*(宗統) was not be confirmed. But superficially *Seoin's* contention was admitted, and political landscape which is lead by *Seoin* was not changed. In the process of controversy a sings of political struggle was implicitly emerged, but the decision which was based on 《*Grand Rule of Laws*(經國大典)》 blocked severe conflict.

Situation in *Gabinnyesong*(甲寅禮訟) was different from that of *Gihaeyesong*. *Hyeonjong*(顯宗) changed his lukewarm decision at the *Gihaeyesong*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controversy, and *Hyojong's* position determined to *Injo*(仁祖)'s *Jeokjangja*. In that progress *Seoin's* ritual theory was considered incorrect and as a result *Namin's* ideological justification was intensified. But *Hyeonjong* did not change the political regime, also didn't punish *Seoin*.

Immediately after *Gabinnyesong*, *Hyeonjong* passed away and *Sukjong*(肅宗) was crowned, replacement of the ruling forces arose and *Namin* occupied important position in the government. The reason of replacement was that *Seoin* 'misinterpretation of ritual' in the course of controversy. In other words, political impact of *Yesong* made regime change right after the enthronement of *Sukjong*. In that process *Sukjong* actively mobilized *Cheoksin*(戚臣), a group that closely related to political power of the king. *Namin's* regime was approved by means of authorization of their ritual

theory's validity, so *Sukjong* could led the political dynamics between king and *Bungdang*.

A period from enthronement of *Sukjong* to *Gyeongsinhwanguk*, political situation was led by *Namin* and *Cheoksin*. *Namin* continued criticism of *Seoin*'s 'misinterpretation of ritual' by means of *Gomyo*(告廟) and tried to seize military power.

Seoin's downfall and regime of *Namin* was practically approved by *Sukjong*, at the same time it means that *Namin*'s ritual theory was accepted as a doctrine. Restrain *Namin*'s ideological justness was practically impossible, and a new political action was emerged. When conspiracy of some people belonging to *Namin* was exposed, *Hwanguk*(換局) that accompanied with death penalty and mass punishment took place. *Hwanguk* revealed ideological ·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Seoin* and *Namin* that coexistence was not possible anymore. As a result the nature of *Bungdang* as a political group that their political goal is to regime the government was clarified.

By *Hwanguk*, *Sukjong* intended to control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himself and ruling *Bungdang*, deposed *Bungdang*, and *Cheoksin*. In that process the presence of *Bungdang* which were considered political taboo in the past was officially recognized, and depending on the political dynamics between king and *Bungdang* political changes took place. At this point the political impact of *Yesong* was terminated, and a new political terrain was emerged, and at the center of that was check and balance between king and *Bungdang*, and *Hwanguk*.

keywords : Yesong(禮訟), Seoin(西人), Namin(南人),
Cheoksin(戚臣), Political dynamics between king and
Bungdang(國王-朋黨 力學關係), Hwanguk(換局)
Student Number : 2009-20046